

민주시민교육강사 전문성 강화 및

민주로드 체험

자 료 집



- 일시 : 2020년 8월 19일(수) ~ 오후 2시~5시
- 장소 : 인천민주화운동센터 교육실
- 주최 : (로고)인천민주화운동센터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인천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 후원 : (로고)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시민교육강사 전문성 강화 및 민주로드 체험

- 접수기간** 2020년 8월 3일(월)~8월 14일(금)
- 접수방법** 인천민주화운동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idph@hanmail.net로 전송
- 대 상** 민주시민교육에 관심있는 단체 활동가 및 시민
- 교육기간** 2020년 8월 19일(수)~9월 23일(수) 오후 2시~5시 총 6회
- 교육장소** 인천민주화운동센터 교육실
- 문의** 032-862-5353 (담당: 정은미)

회차	일 정	주 제	강 사
1	8/19(수)	철학과 민주주의	김창수 (인하대학교 교수)
2	8/26(수)	노동과 민주주의	이동익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3	9/2(수)	성평등과 민주주의	정이은 (소설가)
4	9/9(수)	환경과 민주주의	박주희 (녹색연합)
5	9/16(수)	경제와 민주주의	김진방 (인하대학교 교수)
6	9/23(수)	민주로드 체험	인천 및 강화일대 민주로드 체험

- ※ 6회차(9/23)는 종일 체험으로 하루종일 시간을 비워두셔야 합니다.
- ※ 상황에 따라 강의날짜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인천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차 례

◆ 철학과 민주주의 -----	04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	
김창수(전 인천연구원 부원장, 인하대 초빙교수)	
◆ 노동과 민주주의 -----	27
이동익(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 성평등과 민주주의 -----	35
정아은(소설가)	
◆ 환경과 민주주의 -----	49
박주희(인천녹색연합)	
◆ 경제와 민주주의 -----	53
김진방(인하대학교 교수)	
◆ 민주로드 체험	

철학과 민주주의

민주주의에 대한 재성찰

김창수 (전 인천연구원 부원장, 인하대 초빙교수)

Ⅰ 머리말

‘민주주의’는 민주화운동의 핵심 개념으로 자명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은 매우 모호한 개념이다. 자유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공화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사회 민주주의 등의 용례에서 보듯 다양한 수식어와 결합이 가능하다. 그만큼 정체성도 다양하다. 민주주의는 현대 정치를 지배하는 상징처럼 기능한다. 상징이 되면 상징체계(system symbolique)에서 훼손할 수 없기 때문에 모두 민주주의 자임을 자처하며 민주주의라는 상징의 공리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외연이 확대되면서 내포는 오히려 축소되는 역설적 현상과 관련하여 브라운은 민주주의라는 말이 누구나, 그리고 모두가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싣는 ‘텅빈 기표’처럼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민주주의를 개념으로 접근하는 방법보다는 실제로 이뤄지는 정치를 주목하며 실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는 이미 달성된 상태이기보다는 달성해야 할 것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현실에서 실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주주의나 민주화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개념 자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아니라 해당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민주화가 적절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즉, 어느 수준의 민주화가 바람직한지 또는 실행될 수 있는가이다.¹⁾ 제도과 절차를 중시하는 대표적 정치학자는 달(Dahl)과 린츠(Linz)이다.

- “민주정부는 자유롭고 공개적인 선거가 이루어지고 정치 참여에 대한 제약이 상대적으로 약하면서 진정한 정치경쟁이 이루어지고 넓은 차원에서 시민권의 보장이 이뤄지는 정치체계” -달(Dahl, 1971)

1) 신명순(2016) 「민주화와 민주화운동의 이론적 고찰」, 『한국의 민주화와 민주화운동』, 25쪽

- “자유로운 결사, 자유로운 정보,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같은 기본적 자유의 바탕 위에 정치적으로 선호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지도자들이 비폭력적 방법으로 일정한 임기동안 선출되는 정부” - 린츠(Linz, 1975)²⁾

공정한 선거를 강조하는 달이나 자유롭게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결사와 소통의 조건을 강조한 린츠의 개념은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 체도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 민주화’라고 할 수 있으며, 제도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민주화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절차적 민주주의’에 해당한다. 또 법과 제도는 국가가 규정한 바에 의거하여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 민주주의라고 지칭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은 새로운 인식의 도구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갖춰야 할 논리적이고 당위적인 조건이다.

② 민주화 운동과 민주주의의 동역학

정치학에서 민주주의는 보통선거권, 주기적인 선거, 정당간의 경쟁을 통한 정부의 구성 등 민주적 경쟁의 규칙을 확립하는 ‘절차적 최소 여건’을 갖춘 정치체제로 이해해 왔다. 광의의 민주주의 : 정치의 체제라기보다는 ‘사회의 상태’를 의미한다. 민주주의는 절차적 최소요건을 갖추으로써 스스로 자기발전의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하 어떤 지적·도덕적·문화적 토양을 발전시키는데 따라 더 좋은 내용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다. 민주화 이후에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엄청난 변화가 있었지만 한편으로 보면 달라진 것이 없다. (최장집, 2019)

한국사회의 민주화운동은 ‘반독재’ 투쟁을 상기시킨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승만 정부의 독재에 대한 국민적 저항으로부터 시작했다. 1960년 4월 항쟁에서 시작된 반독재 투쟁은 1970년대의 반유신운동, 1980년 광주 5월 항쟁, 1987년 6월항쟁 등으로 이어지면서 한국사회의 민주적 변화와 발전을 추동해왔다. 2001년 제정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서도 ‘민주화운동이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이라고 정의했다. 법률적으로는 권위주의적인 통치에 항거한 활동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민주화운동은 새로운 헌정체제를 요구하는 투쟁이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민주화란 권위주의나 파시즘과 같은 비민주적 정치체제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역동적 과정을 가리킨다. 실제로 민주화운동은 대중적 저항을 통해 권위주의적 국가권력을 무력화하고, 시민사회를 감시, 동원의 대상으로 삼고 억압해온 통치메커니즘을 민주적 정치과정으로 전환해왔다는 점을 주목하면 반독재의 개념보다 ‘탈독재’(post-dictatorship)의 전략 실현으로 보는 것이 사실에 더 부합한다(홍성태, 2018). 한국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는 ‘민주 정부’, ‘민주연립정부’, ‘민중권력’ ‘민중민주 정부’ 등의 새로운 헌정체제가 제시된 바 있다.

민주화운동은 반독재 투쟁이자 새로운 헌정체제를 확립하는 투쟁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시민의 일상적인 권리를 확장하는 투쟁이기도 하다. 손호철은 민주화운동이 이루려고 하는 민주주의를 정치적 민주주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생산자 민주주의, 일상성의 민주주의로 범주화하고 있다. 첫 번째는 정치 엘리트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정치적 선호를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도록 사상과 결사의 자유와 같은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치적 민주주의이다. 두 번째는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등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보존되어야 할 최소한의 존엄성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이다. 세 번째는 생산자들이 스스로 주요한 결정을 내리는 생산자 자주관리를 보장하는 생산자 민주주의이다. 네 번째는 다양한 일상적인 삶에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상성의 민주주의이다.³⁾

민주화운동은 정치적 민주주의를 위한 반독재투쟁으로 국한하여 이해할 경우 민주화운동의 입체적 성격이 드러나지 않는다. 민주화운동은 독재에 대한 반대를 넘어 대안 체제인 민주정부 수립과 새로운 헌정체제 확립을 요구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며, 나아가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 생산자 민주주의, 인권과 평등을 포함하는 일상적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도 민주화운동의 범주에 포함하여 이해하는 확장된 인식 지평이 필요하다.

실질적인 민주화운동이란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근본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운동일 것이다. 민주화의 정신과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최대치가 헌법과 법률이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건국이념과 정치 체제가 제시되어 있다. 국가의 책무는 정의(正義), 인도(人道), 동포애(同胞愛)의 민족 단결을 실현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는 것,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3) 손호철, 「민주화운동의 내포와 외연」.

균등한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전문에 제시된 내용은 민주화의 절차가 아니라 도달해야 할 결과이자 목표이다. 민주적 정부와 사회는 이 같은 목표의 실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제1장 총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물론 실질적 민주주의는 이상적 목표로서 이를 완전하게 실현하기는 어렵지만 그 실현은 상대적으로 측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실질적 민주주의는 제도적 민주주의의 기반 위에 추구될 수 있으며 실질적 민주주의가 심화되면서 제도적 민주주의도 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자는 상호 의존적 관계에 있다고 하겠다.

③ 깊은 민주주의를 위하여

플라톤은 『국가/정체』에서 우월한 자의 이익이 열등한 자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도시를 만들고자 한다. 이는 결국 blaberon이 없는 도시를 꿈꾸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계급이 모두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주의가 한편의 이익이 다른 편의 손해가 아니라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정의는 공동의 것을 나누어 개인들에게 적절한 몫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개인은 ‘공동의 것’과 관련하여 자신의 몫 이상을 취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공동선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각자는 척도를 지켜야 한다. 공동의 것에 대한 몫은 어떻게 나뉘어야 할까? 공동체의 각 ‘부분들’이 공동체의 가치에 비례하게 분배하면 될 것이다.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마르크스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 잠재적 반체제 세력인 노동계급의 조직과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다. 노동조합 같은 일상 조직, 노동자 정당, 노동자연대체가 같은 조직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이다. 그러나 정치적 대표자들에 대한 영향력과 통제에서 불평등이 나타난다. 기업주와 부자들은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등과 수시로 만나고 접촉하며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행사하지만 일반 유권자들은 몇 년에 한 번 선거철에나 정치적 대표자들을 볼 수 있다. 또, 선출해 놓은 정치적 대표자들을 통제할 길이 거의 없다. 당연히 계급 불평등이라는 근본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 불평등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상의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인데 사실상 부르주와 민주주의이며 실제 내용은 자본가 독재이다.

민주주의가 자본주의적 한계를 뛰어넘어 확장된 역사가 있다. 노동자 권력이었던 1871년 파리 코뮌과 1917년 러시아 소비에트가 그것이다. 파리와 러시아의 대중은 노동자 평의회라는 아래로부터 건설한 대안 권력 기구를 통해 잠깐 동안 사회를 직접 통제했다. 노동자 평의회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허락되는 그 어떤 민주주의보다 앞서가는 민주주의를 구현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이고 국민들의 정체성이 그 국가를 정의하는 것이며, 국민으로 부터 주권, 즉 생사여탈권이 나온다는 말이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한꺼번에 정치에 참여할 수 없고 추첨을 통해 아무나 대표를 뽑지도 않는다. 투표라는 참여의 과정을 거치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현실에서의 민주주의가 될 수 밖에 없으며, 이런 연유로 대의제 민주주의는 과두제의 성격을 떨 수 밖에 없다. 현실의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들을 보자면 좋은 대학을 나왔거나, 판사나 검사 출신이거나, 돈이 엄청나게 많다거나, 이런 저런 이유로 똑똑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절대 평범한 일반인과 같을 수 없다. 그런 잘난 사람들을 정치인으로 뽑아야한다고 사람들은 믿으며, 그런 사람일수록 어리석은 민중들을 지배하기에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알제리 태생의 프랑스 철학자 자크 랑시에르(Jacques Rancière, 1940년생)는 민주주의를 몫없는 이들의 몫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정치란 아무나와 아무나의 평등일 뿐, 정치적 참여에는 아무런 자격이 필요하지 않다. 차라리 추첨제야말로 민주주의에 적합한 제도이다. 아무나와 아무나의 평등이라는 전제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능력이나 자격에 따른 통치, 곧 금권정치나 과두제 정치가 아무나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랑시에르는 또 민주주의를 ‘과잉’으로 정의한다. 즉 민주주의는 사회 구성체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지위에 걸맞는 몫을 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이 거기에서 갖고 있지 않은 자격과 몫을 요구하는 어떤 과잉 개념으로 특징 지워진다. 이렇게 이해된 민주주의는 따라서 그에게는 정치 자체와 다르지 않다. 즉 민주주의적 과잉이 바로 정치이다.

랑시에르가 오늘날 좌우 진영에 널리 퍼져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에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은 곧 정치 자체에 대한 비판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은 랑시에르가 지적하고 있듯이, 민주주의라는 말의 탄생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다.

○ 민주주의 내부의 적

츠베탕 토도로프 공산주의 국가인 불가리아 태생으로, 24세때인 1963년 프랑스로 이민을 왔다. 공산주의 체제와 민주주의 체제를 산 경험을 가지고 유럽사회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진단한다.

프랑스 혁명 이후 민주주의 대두의 고찰과 함께, 민주주의의 취약성, 민주주의 내부의 적(메시아주의, 포퓰리즘, 신자유주의)에 대해 분석했다. 또, 현재 유럽사회의 문제인 인종갈등, 민주주의란 위선으로 포장된 리비아사태 등도 비중있게 말하고 있다. 이슬람 근본주의가 서구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협이라는 진단은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의 핑계에 불과하다고 단언하고, 서구 민주주의의 위기가 내부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심각하다고 진단한다. 민주주의의 3요소를 진보, 자유, 인민(민중, 대중)으로 정리하고, 이 세 요소가 절대화하게 될 때 각각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고대와 중세 역사, 현실 정치를 오가며 명료하게 정리해낸다. 20세기 역사의 3단계, 즉 전체주의(불가리아 공산주의), 파시즘을 극복한 자유주의, 신자유주의를 겪은 토도로프는 현재 민주주의의 적은 그리스에서 ‘휴브리스’라고 불렀던 인간적 오만함의 귀환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류는 생태주의를 비롯한 겸손하면서도 낙관적인 장기적 대안들을 고민해야 한

다. 또 (도덕적 목표를 추구하는 정치적 이상주의와 대립하지 않는) 새로운 현실주의를 추구해야 하는데, 이는 인간의 개인적 삶과 공동체적 삶의 특징에 관한 인문·사회과학적 연구를 참조해서 얻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 1905~75) 1960년 5월24일, 600만명의 유대인을 수용소로 이송한 게슈타포 유대인 과장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 (Adolf Eichmann)이 도피 15년만에 체포되어 이스라엘로 압송, 재판 과정 취재했다. 참관 후에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출판하였다. 그녀가 말하는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는 악이란 뿔 달린 악마처럼 별스럽고 괴이한 존재가 아니라, 사랑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류역사에 오래 기억될 엄청난 범죄의 원인을 아이히만의 ‘사고력의 결핍’에서 찾았다. 아렌트는 이렇게 주장했다. “사유의 바람이 드러내는 것은 지식이 아니다. 사유는 옳은 것과 그른 것, 아름다운 것과 추함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다.” 아렌트의 민주주의 철학은 체계적이고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정치 사상, 자율적이고 웅장한 우주적 질서를 가진 구상 속에 있다. 자율성을 토대로 개인차원의 내면과 외면 세계, 마을이나 공동체에서 자치공동체, 확장된 공화국, 공화국의 확장으로 연방국가, 연방국가의 확장으로 세계연방이 있다.

④ 한국의 민주주의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가 질적으로 나빠졌다고 본다. 계급 간 불평등 구조는 훨씬 빠른 속도로 심화되어 왔으며, 과거 교육과 근면을 통해 가능했던 사회이동의 기회는 크게 줄어들었다. (최장집)

유시민 『후불제 민주주의』

유시민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후불제 민주주의’로 규정한다. “대한민국 헌법이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손에 얻은 일종의 ‘후불제 헌법’”이고, 때문에 “민주주의 역시 나중이라도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하는 ‘후불제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퇴보 아닌 퇴보의 길을 걷는 것은 헌법에 대한 고민이 없기 때문이라고 유시민은 강조한다. “사회적 인간으로서 추구하고 준수해야 할 가치와 규범”이 헌법의 조문에 가득함에도 그 가치와 함의를 애써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유시민은 정치인으로서의 경험, 자연인으로 돌아와서 보게 된 정치 현실 등등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면서 우리 모두가 헌법에 눈을 떠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

김누리(중앙대 교수)는 민주주의 발전과 달리 불평등 심화 “공정보다는 정의를 원칙으로 세워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한국사회가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모범국가로 된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동시에 굉장히 많은 불평등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을 제외하고 수년째 자살률 1위, 노인빈곤률 50~52%, 압도적으로 높은 노인·청년 자살률, 산재사망률 21년째 1위 등은 정상적인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특히 “21년째 산재사망률이 1위라는 것은 너무나 치욕적인 기록”이라며 “영국은 2008년 ‘기업살인법’을 만들고 기업에 책임을 물어 산재사망률을 줄였으나, 현재 한국의 산재사망률은 영국의 25배”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칼럼에서 한국은 ‘자본주의 2세기 동안 가장 불평등한 나라’라고 표현했다”며 “한국을 휩싸고 있는 불평등 문제는 심각하고, 이를 어떻게 풀어야할지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누리 교수는 "민주주의자 없는 민주주의"라고 답했다. 광장에 모여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집에 가면 가부장적인 부모, 학교에서 권위주의적인 교사, 회사에서 갑질하는 상사가 되는 사람들이 된다고 보았다. 이같은 괴리는 한국에서는 68혁명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68혁명 은 1968년 5월, 파리를 중심으로 생긴 변혁 운동이다. 모든 형태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운동으로 오늘의 독일과 유럽을 형성한 일대 지각변동을 가져왔다. 그런데 전 세계가 68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외칠 때 우리나라만 정 반대로 움직였다. 미국은 베트남 전 파병반대로 68이 전개되었다.

1968년부터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한국을 병영사회로 개편한다. 주민등록법을 만들어 간첩을 색출하고, 학교에 교련수업(무기 실습 등)을 도입한다. 1968년 한국은 군사사회, 병영사회로 바뀌고 만 것이었다. 박정희 독재는 유신으로 치달아 갔고 결국

그는 민주주의를 정치민주화 / 사회민주화 / 경제민주화 / 문화민주화를 구분해서 볼 것을 권유한다.

사회민주화 : 사회 조직 구성원들이 자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

경제민주화 : 한국에서 가장 민주화가 안 된 분야는 기업이다.

문화민주화⁴⁾ : 인간관계를 수평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4) 문화정책에서 사용하는 문화민주주의와 다른 개념으로 일상과 삶의 방식의 민주화를 말함. 문화민주화는 '소비' 문제로까지 확장되어 환경보호를 위해 소비 포기, 소비 최소화의 자급주의적 삶을 실험하기도 한다. 미래 생명에 대한 책임, 다음 세대가 살아야 할 공간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지고, 내 욕망을 위한 소비는 줄이자는 것이다. 문화민주화는 인간 지배로부터 자연의 해방, 생태적 해방을 의미하는 개념으로까지 확장되기도 했다.

김누리는 시민들이 ‘강한 자아’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촛불혁명과 박근혜-최순실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의 위대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었다. 우리는 한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생명력에 경탄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아슬아슬한 살얼음판 위에 서 있는지도 깨달았다. 촛불혁명으로 폭발한 한국 민주주의의 저력은 ‘역사적 기억’에서 나온 것이다.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10 민중항쟁의 역사는 시민들의 기억 속에 살아남아 그들을 거리로, 광장으로 나서게 한 힘이다. 발터 베냐민의 말처럼 “위기의 순간에 섬광처럼 번쩍이는 역사적 기억”이 광장의 유토피아를 만들어낸 것이다.

촛불혁명을 야기한 ‘박근혜 사태’는 동시에 한국 민주주의의 허약한 체질을 여실히 드러냈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진 ‘민주정부’가 곧 민주주의의 정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명박-박근혜로 계승된 ‘준파시즘 정권’의 야만적 행태가 일깨워주었다. 언론의 자유는 무너지고, 노동조합은 파괴되고, 인권은 짓밟히고, 교육은 어용화되고, 검찰과 국정원은 권력의 충견으로 전락한 현실은 ‘파시즘의 부활’을 방불케 했다. 확고한 줄 알았던 민주주의의 토대가 너무도 속절없이 무너졌다. 왜 위대한 민주혁명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국 민주주의는 이리도 허약한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한국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자 없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최대 적은 약한 자아다”라는 아도르노의 유명한 명제는 한국 민주주의가 지닌 문제의 정곡을 찌른다. 약한 자아를 가진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사회에서는 민주주의가 온전히 뿌리내리기 어려운 것이다. 자아의 문제가 민주주의의 핵심문제라면, 이제 자신의 자아를 냉정하게 돌아볼 때다. ‘나는 얼마나 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가.’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가정, 학교, 일터에서 ‘우리는 얼마나 민주주의자로 사는가.’ 민주주의는 단순히 정치체제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다. 삼권분립과 대의민주주의를 신봉한다고 다 민주주의자가 아니다. 민주주의자는 어디서나 당당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타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불의한 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강한 자아’를 가진 자다. ‘민주주의의 최대 적이 약한 자아’라면, 한국 교육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최대 적이다. 학생의 자아를 철저히 약화시키는 주범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자아가 강한 아이도 한국의 학교체제에 발을 딛는 순간 온전한 자아를 보존하기 어렵다. 학교는 학생들을 ‘존엄한 인간’으로 존중하지 않고 점수로 줄 세워 우열의 질서 속에 배치한다. 그럼으로써 한쪽에는 일상적인 모욕과 무시 속에서 열등감과 좌절감을 내면화한 ‘열등생’을 만들어내고, 다른 쪽에선 턱없는 우월감과 오만한 심성을 가진 ‘우등생’을 길러낸다. 이들은 모두 자아를 파괴하는 거대한 폭력기구의 희생자들이다. 열등생의 자아가 모멸감에 의해 손상된다면, 우등생의 자아는 오만함에 의해 왜곡된다.

‘역사적 민주주의’가 ‘일상적 민주주의’로 착근하기 위해서는 강한 자아를 가진 민주주의자를 길러내야 한다. 한국 교육의 ‘최고 우등생’ 우병우, 김기춘, 조운선이 ‘민주주의의 적’이 된 이유는 자명하다. 한국 교육이 민주주의의 적이기 때문이다. 오만한 학습기계가 아니라 당당한 민주주의자를 키워낼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다. ‘수월성 교육’에서 ‘민주 교육’으로의 대전환은 시대적 요청이다. 거기에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가 달려 있다. ‘교육혁명’이 한국의 미래이다.

수 일상 속의 민주주의

□ 촛불혁명과 과제

<진행중인 혁명으로서의 촛불>

촛불은 2016년 10월 29일부터 이듬해 3월 25일까지 총 21차 대회로 5개월간 연 인원 1600만명, 100만이상 집회 5차례에 달하는 세계사적으로 유례없는 시위로 폭력을 수반하지 않은 명예혁명이다. 여론 조사결과를 보면 촛불집회는 국민의 절대적 지지속에 개최되었다. ‘촛불집회’은 표면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 무책임한 대통령, 한 개인이 국정을 농단케 한 무능한 정부에 대한 항의였지만 점차 헌정체제의 문제로 확대되면서 ‘새로운 공화국’을 요구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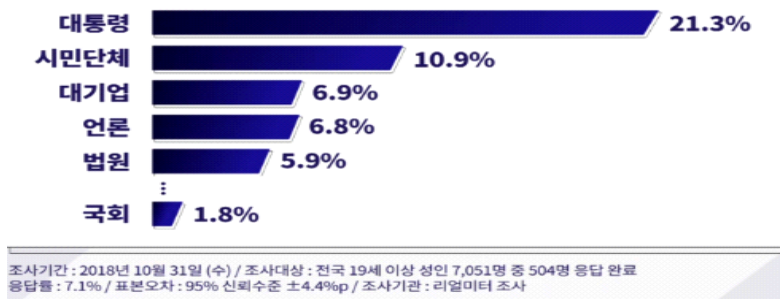
‘촛불’의 성격을 혁명으로 규정할 것인지는 논란거리이다. 일반적으로 혁명이란 기존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 기초, 사회 제도, 경제 제도, 조직 따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다. 촛불집회로 대통령이 탄핵되고 정권이 교체되었으며, 새정부는 ‘적폐청산’을 내걸고 촛불혁명의 과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기존 헌법의 범위 내에 있다. 문제인 정부가 발의한 개헌안은 보수야당의 반대로 폐기되었다. 새정부에 의한 각종 개혁은 폭과 깊이에서 혁명적이라 할 수 있지만 헌정 ‘체제’(regime)가 바뀌지 않았으므로 엄밀히 혁명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집권여당이 보수야당을 설득하여 개헌하거나 2020년 총선의 향배에 따라 ‘87년 체제를 개헌으로 바꾼다면 ‘촛불’은 명실상부한 혁명의 성격을 띠게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촛불의 명목상의 혁명 여부와 무관하게 그 지향점이 체제 자체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혁명적이라는 점이다. 검찰과 국정원, 경찰등 권력기관의 근본적 개혁, 사법개혁, 의회와 대통령제 개혁 등과 같은 정치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촛불은 다시 점화될 수 있다. 이같은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국민과 정부, 체제간의 모순은 심화될 수 밖에 없다. ‘촛불’은 현시점에서 미완의 혁명이지만 그 동력이 살아있는 진행 중인 혁명이다. ‘촛불’이 제기한 각종 과제들은 개헌과 무

관하게 사회 각 분야별로 추진되어야 한다.

<새로운 시민과 낡은 제도>

○ 총 21차에 걸친 촛불시위는 탈위계성, 다중정체성, 자발성, 창조성, 유쾌함, 속도를 특징으로 하는 참여의 장을 열었다. 촛불시위 당시 무대위의 발언에 나선 시민의 수가 1000여명에 달한데서 보듯 시위참여자들은 개인이면서 다양한 자기표현으로 공론을 만들어 간 새로운 시민들이었다. 대한민국은 경제 10위, 한류 문화콘텐츠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정치제도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특히 법원(5.9%) 국회(1.8%)로 나타나 사실상 불신임 수준이다.



지방의회에 대한 인지도나 신뢰도 역시 그리 높지 않아 사회 전반적인 신뢰도가 낮다. 한국의 사회적신뢰도 28.6%로 덴마크(74.9%)나 노르웨이(72.9%)에 비하면 1/3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 촛불혁명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하는 ‘생명의 정치’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공동체 회복’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혁과 의식의 대혁신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국가와 지방 정부 및 공공 부문은 공공성과 신뢰성을 새롭게 창안하고, 협치와 분권의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새로운 시민’의 참여가 보장된 민주주의 제도를 확립하여 실현하는 길이다.

○ 위험사회가 현실화하고 ‘내부’ 위기가 내파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이 일찌기 경고한 바 있듯이 산업화를 통해 구가한 물질적 풍요가 사회를 총체적으로 위협하는 ‘위험사회’(risk society)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일련의 사태는 과학기술 신화에 대한 철저한 성찰을 요구하는 것이다. ‘위험사회론’이 사회의 물적 토대와 외적 환경의 위기를 경고한 것이라면, 최근 우리 사회의 몇 가지 징후는 사회의 ‘내부’가 위기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의 내부란

가정과 학교처럼 개인이 보호되고 교육받는 공간이다. 그중 가족과 가정의 위기는 가장 심각하다. 학교와 직장도 그동안 가려져 있던 각종 갑질 행태와 미투운동으로 권력형 성폭력이 폭로되면서 위기 상태임을 드러내고 있다.

□ 수많은 민주주의

○민주주의와 다양성

판단과 인식의 영역에서는 단순함이 미덕이다. 학문의 원리, 인식의 원리는 단순하고 명백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전제는 최소화되어야 하고, 가설은 명쾌해야 한다. 윌리엄 오컴(W.Occam)은 대상을 가장 단순하면서 명쾌하게 설명하는 것이 진리에 가깝다고 보았다. 만약 동일현상을 설명하는데, 두 개 이상의 이론이 모두 타당하다면, 우리는 단순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사물, 사건, 현상을 설명하는 논리가 복잡하다면 진리에 접근하지 못했거나 최소한 인식이 아직 철저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인식의 대상인 세계는 오히려 다양할수록 아름답게 보인다. 다양함은 심미적 가치를 넘어 생태계의 원리이다. 생태계(ecosystem)는 상호작용하는 생명체들과 또 그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주변의 무생물 환경까지 아울러 지칭하는 말이다. 자연생태계의 이상은 다양한 생물이 함께 번성하는 중 다양성이다. 이 다양성의 공존 속에서 종들이 진화하고 때로는 새로운 종이 탄생한다. 건강한 자연 생태계의 지표는 얼마나 ‘다른’ 생물들이 공존하고 있느냐이다. 이 다양성은 개체 수준에서도 적용된다. 동물이나 식물은 영양소를 다양하고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하며 필수성분이 부족하거나 일부에 편중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신체의 기관들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다양성은 인간의 창조적 사회활동의 결과이자 조건이기도 하다. 유네스코가 2001년 ‘문화다양성 선언’과 2005년 ‘문화다양성 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 각국이 문화다양성이 교류와 혁신, 창의성의 원천으로 인류에게 필요한 공동의 유산이라는 규정에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인식의 영역에서 단순화는 미덕이지만, 생태계나 사회 조직과 같은 현실에서의 단순화는 퇴행의 조짐이며 위기의 징표이다. 다채로움을 아름다움으로 여기는 미적 심의 경향은 다양성이 삶에 유익하다는 경험의 반영일 가능성이 높다.

○차별어로 변질한 ‘다문화’

‘다문화’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자는 이색적 서명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이 캠페인은 애초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 차원에서 재명명한 ‘다문화’라는 용어의 의도와는 달리 학교나 사회에서 오히려 차별과 혐오의 대명사로 사용되고 있는 현상을 다시 바로 잡는 운동이다. 연구자들이 쓴 학술논문에서도 객관적인 용어 대신

‘다문화 아동’ ‘다문화 자녀’ 등의 관용어가 남발되고 있는 실정이며, 교육기관의 교사들도 학생의 이름 대신 ‘다문화 학생’으로 호명하고 있어, 당사자들에게 ‘다문화’가 수치심과 모멸감을 강요하는 주홍글씨가 되고 만 것이다.

본래 ‘다문화’라는 용어는 문화적 다양성은 세계적 추세를 분석하는 데 사용하는 슬어이며,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를 주목하고 장려하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에 뿌리를 둔 긍정적인 의미의 용어였다. 문화다양성의 철학적 용어가 우리 사회에서 일반화된 것도, 이주민을 차별하는 말이 된 것도 「다문화 가족지원법」의 제정과 관련된다. 다문화주의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의미와 가치를 결혼이민자나 국제결혼 가족에 국한해서 사용한 것은 논리적 오류였다. ‘다문화’라는 용어는 문화론적으로 깊고 넓은 의미를 지니고 개념인데 다문화나 문화다양성의 전형적 사례가 아닌 결혼이민 등을 가리키는 법률적 용어로 사용한 것이다. 결국 ‘다문화’는 한국의 언중들에게 결혼이민자를 비롯한 이주 배경 가족들과 자녀들을 구분하여 부르는 말로 바뀌었으며, ‘다문화’라는 용어가 지닌 본연의 적극적 문제의식도 훼손되고 만 것이다. 차라리 이 법에서 가리키고 있는 “결혼이민자, 국적법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한 결혼이민자, 국적법에 의해 귀화 허가를 받은 자” 라는 객관적인 표현을 나열하면 문제가 없었을 터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정권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거나 정권에 비우호적이라고 판단한 문화예술인 9천여 명의 조사하여 작성한 명단이다. 문체부와 산하기관의 각종 인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의 기준으로 삼아왔다는 사실이 드러나 큰 파문이 일었다.

정부에 대한 입장이나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문화예술인을 차별한 것은 문화예술인과 예술 활동에 대한 정치검열로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대한민국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 양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이다. 비록 이 사건이 최순실과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최순실-차은택 라인이 문체부를 장악하여 문화 행정을 파탄으로 몰고 간 과정에서 드러난 대표적 국정 문란 사건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도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문체부의 전·현직 관료들은 이 리스트가 최순실-차은택 비선 실세 라인이 문체부 장악한 시기에 청와대에서 주도하여 작성한 뒤에 문체부로 내려보냈다고 제보하고 있다. 또 이 리스트를 기준으로 정치검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체부 차관들이 경질되었다는 제보 등을 고려하면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문체부 내부가 아니라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국민에 대한 정치검열은 일제 강점기나 군사 정권 시대의 산물이다. 정치검열은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반문화적 범죄이며, 국민들의 정신을 정권의 입맛대로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음험한 시도이다. 현대판 ‘분서갱유(焚書坑儒)’를 기획하고 주도한 책임자가 누군지를 밝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검찰은 리스트작성의 책임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문화지원기관에 전달하고 활용하였는지에 대한 전모를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작업을 제대로 펼쳐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문체부 내부에서는 차관 출신 인사가 장관후보자로 된 것을 반기는 분위기가 있다. 문체부 내부를 잘 알기 때문에 문체부가 당면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있지만, 인맥과 조직 이기주의 때문에 개혁은 물 건너갔다는 우려도 높다.

지난해 9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실행에 참여한 공무원과 전직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장 등 7명을 검찰에 통보하고, 12명에게 주의 처분을 하는 것으로 인적 청산을 종결했다. 당시 문체부의 조치는 조직보호논리에 갇혀 불법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의 권리를 짓밟은 문체부 관료들의 범죄행위에 면죄부만 부여한 기만행위라는 문화예술계의 격렬한 비난을 들어야 했다.

정부에 대한 입장이나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문화예술인을 차별한 것은 문화예술인과 예술 활동에 대한 정치검열로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 양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이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이른바 ‘최순실과 차은택 라인’이 문체부를 장악하여 문화 행정을 파탄으로 몰고 간 과정에서 드러난 대표적 국정 문란 사건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도 반드시 청산되고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과 같은 고위 공직자의 처벌로 유야무야해서는 곤란하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작성하고 명단에 작성된 단체와 예술인을 각종 지원에서 배제하는 과정에서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명령을 수행에는 무수한 공범자와 조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기 때문이다. (네이버 블로그 ‘인문도시의 꿈’ | 2016. 11. 15.)

○ 갑질문화 청산이 시급하다(2017.8.9.)

‘갑질’이란 권력자가 약자나 아랫사람에게 행하는 부당한 행위를 가리키는 신조어이다. ‘갑질’이라는 말은 최근 폭로된 사건들을 가리키는 말로는 가벼워 보인다. 공판병은 사령관 부부로부터 일상적으로 폭언과 모욕, 협박과 폭력에 시달렸고, 호출벨을 착용하고 호출에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동물처럼 취급받았다. 국토와 국민을 수호하고 있는 군인들과 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 같은 범죄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스스로 명예롭지 않다고 병사가 어떻게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가? 군대의 갑질은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사실상의 이적죄에 해당한다는 관점에서 철저히 개혁해야 한다. 적폐의 표본이 되고 있는 공관병 제도를 우선 바꾸어야 한다. 군인은 가장 엄격한 지휘명령 체계로 움직여야 한다. 그러나 전투명령이 아니라면,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권을 훼손하는 부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의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문제는 군대뿐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갑질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에 만연한 갑질 문화는 적폐 청산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학교나 회사, 공직 사회 등을 비롯하여 인권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조직의 경우 자체 인권감시체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프랜차이즈 회사에도 갑질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가맹본부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와 점주 사이의 계약 내용에 대해 사회적 압력이 작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가맹점주들이 모인 단체의 위상을 대등하게 강화하여 가맹본부와 협상력을 높여나가지 않으면 고질적인 갑질 문화를 개선하기 어려울 것이다.

기업의 총수나 임원, 특히 가맹본부도 ‘인간’을 경영철학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 현대적 기업은 인간 가치를 존중하는 ‘착한’ 기업이어야 한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면서도 사회적 기여도를 높여가야 한다. 최근의 사례처럼 기업 총수의 갑질과 횡포로 인해 기업이 그동안 피땀 흘려 쌓아 온 가치를 일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

갑질은 박찬주 대장이나 대한항공 조현아 부회장처럼 높은 권력자들만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 편의점이나 식당 주인과 점원 간에, 직장의 상사와 부하직원처럼 사회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갑질 근절을 위한 각종 제도의 개선과 함께, 사회 전반의 의식 변화도 따라야 한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정신,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게 해서는 안된다(己所不欲勿施於人)”는 논어의 상식적인 윤리의식이 새삼스럽게 요청되는 시대이다.

○‘갑질’의 본질은 언어폭력으로 나타난다. 언어폭력은 욕설이나 인격 모독적인 조롱으로 나타나지만 성차별적 발언이나 인사상의 협박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에게 굴욕감과 깊은 상처를 남긴다. 피해자들은 조직 내의 하급자이기 때문에 2차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였던 박창진 사무장은 사건 이후 스트레스, 신경쇠약, 공황장애 등을 진단받았고 1년 여의 휴직 끝에 회사에 복귀했지만 팀장에서 일반 승무원으로 직급이 강등되고 직원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등 2차 피해를 겪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 재벌가 임원들의 전근대적 횡포를 의미하는 ‘갑질’이라는 말, 그리고 갑질의 전형적 사례인 ‘땅콩회항’이나 ‘물벼락 갑질’이라는 표현은 사태의 본질을 희화화하는 듯해서 마뜩치 않다. 근본 원인은 기업과 직원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재벌의 계급의식이겠으나 다분히 흥미 위주로 사건을 대하는 태도도 문제다. 재벌과

권력의 ‘갑질’을 다루는 우리 언론의 태도나 시민의식이 더 진지하고 예리해져야 하겠다. ...중략...더 시급한 과제는 직장이나 사회적 위계에서 상급자나 권력에 의해 행해지는 일상적인 폭력, 내재적인 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찾는 일이다.(2017. 8. 9.)

○윤리의식의 재정립이 필요한 대학

서울대 인권센터가 발표한 ‘2016 인권실태 및 교육환경 조사’에 의하면 대학원생 34%가 폭언과 욕설을 겪고 있으며, 14.6%는 집단 따돌림 경험하고 있으며, 40%는 조교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도 적절한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의 개인 업무수행이나 논문 대필 등의 비윤리적 행위도 강요되고 있다고 한다. 대학원생의 19.4%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우울증 경험률은 학부생의 우울증 유병률(7.5%)의 3배에 달하는 수치이며, 한국인들의 우울증 평균 유병률(5%)의 4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대학원생은 학업과 연구를 동시에 수행하는 피교육자, 연구자인 동시에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연구실 행정을 분담하는 노동자의 역할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지도교수와 제자라는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개선도 더딘 실정이다. 대학교수가 성추행이나 가혹행위를 해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지도교수와 제자라는 특수한 관계 때문이다. 국내 대학들이 대학평가를 의식한 경쟁에 목을 매달고 있는 것도 대학이 인권을 소홀히 하는 배경이다.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원생들은 학문 후속세대가 아니라 지도교수의 논문발표나 연구 프로젝트와 같은 성과 달성을 위한 노동력으로 취급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지식 공동체인 대학원에도 새로운 윤리의식의 정립이 필요하다. 사제관계에 대한 우리의 전통에는 스승과 제자를 수직적으로 보는 봉건적 의식이 남아 있다. 문하(門下) 관계의 전통은 책임 있는 스승과 헌신적인 제자의 모습을 상기시키지만 자칫 폐쇄적 가족주의나 파벌주의로 흐를 우려도 있다. 대학원이 참된 지성의 공동체가 되려면, 대학의 구성원들이 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를 학문적 동반자 관계로 인정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2017.7.4.)

○내부의 위기

가족과 가정의 위기는 가장 심각하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1990~2002년간 의도적 살인사건으로 죽은 여성 가운데 46.4%는 배우자이거나 내연·동거관계인 남성의 손에 살해당했으며 이들 상당수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폭행·학대받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가 밝힌 가정폭력 통계도 충격적이다. 가정폭력을 경험한 가정이 전체 가정의 5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두 집 중 한 집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정폭력의 발생수

도 최근 10년간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초·중·고교생의 자살하는 사유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원인 가정불화인 것으로(37.5%) 나타났다. 최근 끔찍한 성폭행 사건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어 시민들은 뉴스 보기가 두렵다고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성폭행 가해자의 과반수도 일반적 예상과는 달리 가족이나 친인척, 연인, 직장 상사와 동료, 이웃 사람과 같이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들이다. 역시 ‘내부’의 위기가 심각하다는 지표이다.

개인의 안식처가 되어야 할 가족과 집이 갈등과 폭력으로 갈수록 황폐해지고 있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가족을 둘러싼 바깥 고리인 학교와 일터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을 주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학교와 직장은 오직 성적과 성과를 기준으로 줄 세우고 있어 학생들과 직장인들은 만성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실업률과 비정규직의 증가하면서 사회의 불안지수가 높아지고, 가정 경제의 기반도 취약해지고 있다. 가계부채가 위험 수준에 육박하고 있으며 부동산 경기가 장기 침체에 빠지면서 이른바 ‘하우스 푸어’ 문제도 가족을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수입의 대부분을 보육비와 교육비로 지출하고 있어서 ‘저녁이 있는 삶’은 요원하다.

‘내부’의 위기를 초래한 일반적 원인 중의 하나는 도시화 현상일 것이다. 가족과 집이 위치한 이웃과 마을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한국 사회가 압축 성장하면서 새로운 가족관이 정립되지 못한 문화적 지체 현상도 한몫을 하고 있다. 상당수의 남성은 여전히 봉건시대의 유산인 가부장적 사고로 가족들을 바라본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는 서로 독립적이고 동등한 인격체로서 정서적 경제적인 동반자로 여겨야 하지만 소유하고 지배하는 대상으로 여기려는 경향이 유물처럼 잔존하고 있는 것이다.

가족은 가장 작은 사회이지만 우리 사회의 미니어처이다. 가족이 겪고 있는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위기의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이다. 우리의 대신 후보들이 이런 ‘내부’의 위기, 서민 가정이 처해 있는 위기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 진검 승부하기를 희망한다.(2014. 6. 7.)

○정치적 올바름_신사와 숙녀의 종언

‘신사와 숙녀’라는 호명을 유럽의 지하철에서는 들을 수 없게 되었다. 행사나 연설을 시작할 때 관용적 인사말인 ‘신사, 숙녀 여러분(Ladies and gentlemen)’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영국은 2017년 7월부터, 네덜란드는 2017년 12월부터 모든 열차와 역사 안내방송에서 승객들을 ‘신사 숙녀’라는 호칭 대신 ‘여행자(travelers, passengers)’로 바꾸어 쓰고 있다. 남자와 여자로만 나누는 기존의 성

구분이 성 소수자를 소외시키고, 성차별적인 고정관념을 고착화시키고 있다는 문제 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신사는 남자의 높여 부를 때나, 사람됨이나 몸가짐이 점잖고 교양이 있으며 예의 바른 남자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해왔다. 그런데 서양이나 동양에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신사’는 교양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계급이나 권세 있는 지방의 토호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산업혁명 이후 새로 형성된 중산층 계급인 젠트리(gentry)가 영국 신사의 어원이었다. 신분제와 모더니티를 버무린 ‘신사와 숙녀’라는 말의 퇴장은 어쩌면 시간문제였을지도 모르고, 또 사소한 일로 여길 수도 있지만, 소수자 배려라는 명분은 존중할만하다. 성 소수자들에 대한 선진국들의 배려 정책은 세심하다. 스웨덴학술원은 2015년, 자신의 성을 남녀로 구분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을 위한 대명사 ‘헨(hen)’을 공식단어로 등록했다. 스웨덴어로 남자(han)와 여자(hon)를 합성한 단어이다. 미국도 성 소수자에 대한 배려를 본격화하고 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본인의 성을 표시할 때, 남성 또는 여성이 아닌 중립적인 성(‘ze’나 ‘they’)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캘리포니아주는 공공건물의 화장실에 남녀 구분 표지판을 없앤 ‘성 중립화’를 의무화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1인용 화장실의 경우 성 정체성의 구분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우리 사회를 돌아보자.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 성폭력 실상을 고발하면서 미투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됐다. 문단과 연극계를 비롯한 문화예술계와 일부 대학에서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가 드러났지만 여전히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성 중립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국제적 수준에 크게 미달한다. 국가가 주민등록번호로 양성 구분의 ‘대못’을 숫자로 박아 놓은 상태이니 말이다. 직업을 가진 여성들만 여의사, 여교사, 여학생, 여비서, 여군, 여류시인, 여류화가 등으로 나뉘 부르는 우리 관행에 대한 ‘정치적 언어 수정(political correctness)’도 시급해 보인다. 정치와 경제 영역에서 민주주의적 과제가 남아 있지만 일상공간에서의 성 소수자 배려와 젠더중립적 실천도 중요하다. (2018.11.16)

○악플방지법이 아니라 차별금지법을

(전략)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비판은 생산적 결과를 낳을 수 있지만 비난은 관계를 파괴한다.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는 혐오 표현이야말로 반사회적 범죄행위 중의 하나이다. 장애인이나 성 소수자를 비하하는 혐오 표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위안부 동원과 같은 일제의 전범 행위임을 부정하는 주장처럼 확립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혐오 발언에 대해서는 독일처럼 사회적 범죄로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렇다면 차별금지법 제정이야말로 혐오 발언과 악플 재생산을 근절하는 대책 아닐까.

○허수아비 논증

(전략) 허수아비 논증은 일상생활뿐 아니라 실제 학생들의 과제물이나 연구자들의 논문에서도 빈번히 발견된다.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입증하기 위해 기존의 주장이나 학설에서 약점을 의도적으로 확대한 다음 이를 논박하는 식이다. 더욱 고약한 것은 정치적 현안을 놓고 벌이는 정당 간의 논쟁이다. 애당초 대화할 마음은 없고, 상대의 약점을 침소봉대해서 자신의 주장만 펴겠다는 태도이니 역지에 다름없다. 허수아비 논증은 일상에서 빈번히 범하는 오류 중의 하나인데, 실은 논리적 오류라기보다는 배타적 이기심이나 이해관계의 충돌과 같은 입장의 차이에서 비롯된 경우가 더 많다. 상대의 말은 듣지 않고 내 고집만 앞세우게 된다.

들판의 허수아비야 제구실을 못한다 해도 가을을 알리는 전령 노릇은 한다. 또 농민들의 표현물이라 여긴다면, 서로 다른 표정을 하고 서 있는 허수아비들로부터 소박한 조형적 가치를 발견할 수도 있다. 그러나 허수아비 논증은 대화를 비생산적으로 만들며 배타적 대립으로 사회를 분열로 몰아가는 백해무익한 ‘허수아비’이다. 들판의 허수아비를 볼 때마다, 우리 사회에 횡행하는 허수아비 만들기 식의 토론문화나 내가 저지른 허수아비 논증의 오류도 되돌아보면 어떨까.(인하대학신문 | 2013. 10. 14.)

속 보론, 민주주의 새 구상

□ 공공인프라의 공공성 구현

공공기관 신뢰성 회복: 공공성의 회복을 위한 평가지표 혁신이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공공시설이나 행정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효율성이다. 문화시설의 경우 이용 관객수, 입장료와 대관료 수입, 시설가동율과 같은 성과지표(output) 중심이다. 이런 평가는 운영효율화를 위한 경비절감을 유도하게 되고 평가제도가 오히려 공공문화시설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공공기관은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얼마나 향상시키는 것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의 전면적 혁신이 필요하다. 모든 공공기관, 출자출연 기관은 설립 고유 목표를 공공성의 관점에서 재구성함으로써 효율성이 아니라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음

○ 공공성이란 공공재의 독점이나 사유(私有)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다수의 이익 실현이나 공정한 운영을 내포하고 있는 사회 정의이다. 신자유주의와 글로벌리즘이

세계와 국민국가로 과급되면서 ‘효율성과 경쟁’이라는 시장논리가 모든 사회와 조직을 지배하면서 공공성의 위기가 조성되었다. 철도와 공항과 같은 사회 인프라의 민영화 논란들, 영리병원 도입을 둘러싼 논쟁들은 효율성을 명분으로 한 민영화론과 공공 가치론이 첨예하게 대립한 사례이다.

○공공문화시설에 대한 운영평가의 핵심은 공공성이며, 수준 높은 서비스를 주민의 생활 조건에 맞게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지역이나 계층별 소외를 줄여나가야 한다. 현실에서 대부분의 시민들은 경제적 제약과 시간적 제약, 혹은 신체적 장애와 문화시설 부족 등으로 문화예술 향수와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소득계층과 세대, 직업군별로 문화격차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화격차와 불평등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그 실태를 파악해야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경제적 불평등으로 문화적 불평등이 초래되듯이 양자는 인과관계를 이루며 반복되기 때문이다. 문화적 소외를 최소화하기 위해 문화시설과 문화행정 평가를 성과지표 중심에서 공공성을 비롯한 효과중심의 평가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문화에서의 공공성은 시민이 문화의 소비자가 아니라 창조의 주체로 문화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다. 그리고 특정계층이나 계급의 전유물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여야 한다. 문화는 공공 복리의 한 분야이기도 하다. 문화가 획일적이거나 전체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나, 소수자 문화를 배려하여 다양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문화정책의 수립과 집행, 문화기관의 운영은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전제: 모든 시민이 계층, 지역, 성별, 학력, 신체조건, 소속 집단, 종교, 인종 등과 같은 차이와 무관하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문화권(文化權)을 전제로 함.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구성원이 공공문화시설과 프로그램을 비롯한 각종 문화 활동과 자원에 쉽게 접근하여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정의: 문화영역에서의 공공성이란 ‘사회구성원 누구나 편리하고 자유롭게 문화자원과 시설에 접근하여 문화향유의 권리를 누릴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예술 창조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그 핵

심 내용은 개방성, 평등성, 다양성, 지속성 등 4가지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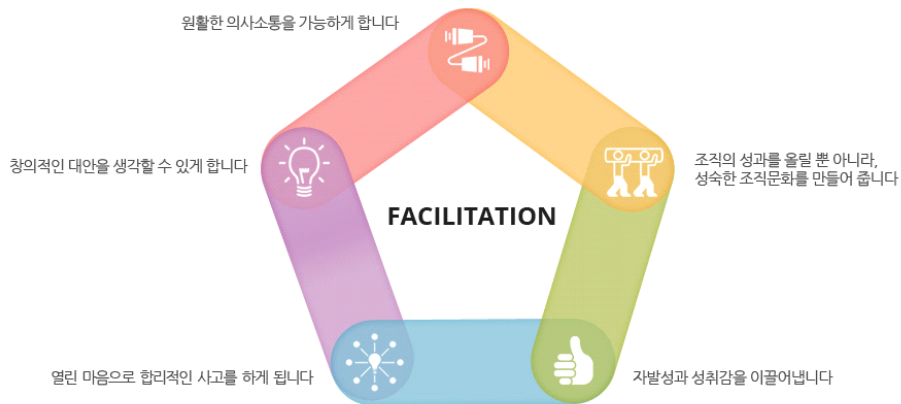
- ◆개방성 : 시민들이 문화시설과 프로그램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시설의 운영 및 정책수립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
- ◆평등성 : 모든 시민이 성별, 나이, 인종, 계급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문화향유의 기회와 권리를 균등하게 부여받을 수 있는 환경
- ◆다양성 : 시민들이 자유롭게 다양한 방식으로 의미를 생산하고 가치를 표현하며, 자신이 원하지 않는 가치, 이념, 관습에 대해서는 무조건적 순종을 강요받지 않고, 국내의 타 지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다양한 문화들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환경
- ◆지속성 : 인력, 예산 등의 측면에서 문화시설의 안정적 운영이 보장된 환경

□ 테크놀러지와 민주주의

○ 다자간 의사소통 촉진기술

탁월한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관점으로부터 도출된 결과는 참여자 모두의 것이기에 실천과 집행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집단 지성을 이끌어내는 일이다. 모든 참석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효과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회의나 워크숍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일을 의미한다.

그룹이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퍼실리테이터의 안내에 따라 실질적 의사결정을 하게 하는 방법이다. 같은 회의실에서 40~100명의 사람들과 함께 합의에 이르는 방법으로 흔히 카드 방법을 응용하여 진행한다. 기본적으로 큰 그룹을 여러 개의 작은 토론 그룹으로 나누어야 한다. 소그룹들은 아이디어를 선별하고 나서 전체 그룹 총회에서 그들의 통찰을 모으기 위해 돌아와 보고한다. 이를 위해서 당신은 소그룹의 퍼실리테이터 팀을 사전에 훈련하고 준비시켜야 한다. 소그룹으로 나뉘서 토의할 때, 각 소그룹의 리더는 동일한 질문을 하고 동일한 절차를 따르도록 확인해두어야 한다. 소그룹들은 플립차트 워크숍이나 매우 빠른 카드 워크숍을 할 수 있다.



○ 블록체인 기술

블록체인은 중앙 집중식 서비스가 가지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시스템으로 신뢰를 보장하는 기술이다. 블록체인은 분산데이터베이스 기술을 통해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분산시켜 다수의 이용자가 대규모의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게 만드는 기술이다. 분산배치로 비용은 적게 들고 장애에 강하다. P2P는 서버나 클라이언트 없이 개인 컴퓨터 사이를 연결하는 통신망이다. 연결된 각각의 컴퓨터가 서버이자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며 정보를 공유한다. 직접민주주의를 네트워크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신뢰검증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블록체인 투표시스템은 암호화된 분산원장으로 조장이 불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해킹이나 조작 우려를 불식하고 신뢰성 높은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투표가 가능함. 직접민주주의 실현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공정한 여론조사와 투명한 정치후원금의 제도의 정착 가능

□ 창의적 조직

○ 몰적molaire/분자적 moléculaire이라는 개념쌍

- 무엇보다 분자적인(moléculaire)! : 분자운동처럼 자유롭지만 분산되지 않은 액체, 지속가능한 유동성과 유연성(sustainable gel), 분자운동이 자유로우면서도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며(오로라), 고체의 경직성과 기체의 증발성을 극복할 수 있는 유연한 액체(gel)
- 리좀형 조직(Rhizome Type Organization) : 리좀은 중심이 없고 시작도 끝도 없다. 항상 중간, 사물의 틈, 존재의 사이, 간주곡을 의미함. 체계와 질서, 동일정보다는 관계와 자유로운 접속이 중요한 관계맺기의 방식. 5) 접속(connection) /이질

5) 체계성과 규정성, 이항대립성(binary), 단일 정체성을 중요하게 설정하는 수지형(樹枝型)과 대조적임.

성(heterogeneity) / 다양성(multiplicity) / 비의미적 단절(fa parallel evolution) / 지도그
리기(cartography)/ 데칼코마니(decacomania)

- ▶ 하나가 전체이며, 전체를 하나가 표현하는 전형성과 전일체(Hollism)
- ▶ 중심도 없고 주변도 없는 동일성과 평등성의 실현
- ▶ 차이는 존중하고 동질성으로 실천하는 '깊은'(성찰적) 민주적 공동체
- ▶ 자발적이며 최소의 질서로 유지되는 아나키적 개인의 자유로운 커뮤니티
- ▶ 세계 인류의 진보를 반영하면서 대지(大地)와 마을에서 실천하는 지역 커뮤니티

노동과 민주주의

이동익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노동과 민주주의

민주노총인천본부 조직국장 이동익

한국사회에서 노동은??



- 노동, 노동자, 노동조합 = 발갱이
- 7~80년대, 노동에 대한 억압적 구조로 급속한 경제성장. 노동문제 해결에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노동력을 쥐어 짜는 산업구조 정착
- '노동 없는 민주주의'와 그로 인한 부정적 결과는 노동에 부정적 인식 고착. 노동을 경제성장의 도구로만 인식하는 억압적 구조 여전히 견제

한국사회의 특징



- 경제성장과 시장 효율성의 가치가 지배하는 사회.
- 인간주의적 공동체와 연대의 가치가 실종 또는 거세된 사회.
- 극단적 개인주의(각자도생)
- 경쟁의 끝판왕(무한경쟁)

노동 없는 민주주의란??

- 모든 사회의 기반을 이루는 '노동'이 대접받지 못하고 노동자들이 시장 상황에 무력하게 휘둘리는 '종속적' 지위에 처한 현실을 이르는 말.
- 한국사회, 노동을 경제성장의 도구로만 인식하는 억압적 구조
- 단순히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전면화만으로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 87년 이후 민주화 30년이 되었지만 노동배제적인 현실 여전. 비정규직, 저임금, 고용불안, 불평등, 빈곤 등등

- 노동에 대한 억압적 구조로 급속한 경제성장
- 노동문제 해결에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노동력을 쥐어 짜는 산업구조 정착
- 민주정부 10년과 촛불항쟁에도 여전히 자본과 국가의 기득권 동맹은 오히려 강화.
- “한국사회가 정치적으로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한 것은 한국 민주주의 자체가 실패한 것을 의미.

원인은??

-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아니 편승한 정부가 책임.
- 87년 이후 민주화 30여년의 시간 경과. 노동배제적인 한국 민주주의의가 주요 원인.
- 노동 배제된 한국민주주의, 성장 일변도의 경제정책(성장 중독)으로 고용 없는 성장, 실업 증가, 취업난, 노동시장의 양극화(정규직/비정규직), 소득 분배 구조 악화, 자살 급증, 출산율 하락, 신용 불량 급증, 그리고 부조리한 정치구조 미청산
- 하지만 민주정부라 자임하는 현재의 권력도 신자유주의를 대세라 수용하며 노동의 문제를 주요 문제로 인식하지 않음. 체제 내 포섭과 배제의 대상으로 인식.

노동은 ...

- 노동은 우리 사회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지탱하고 이끄는 힘.
- 그러나, 87년 노동자대투쟁을 통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 노동자, 노동조합은 정당한 시민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 98년 IMF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 급증, 여성, 장애, 이주 노동자 급증 등 주변부 노동자의 양적 증가와 차별, 배제 확대
- 모두의 노동조합으로 성장, 발전하지 못한 한계 노출.

현실은??

- 현시창 - '꿈은 높운데 현실은 시궁창'.
- 노동이 배제되거나 또는 무너져버린 민주주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 학자금 대출 빚을 갚기 위해 대형마트 기계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질식사한 20대 청년(2011. 7. 2.)
 -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된 세 살배기 아이(2020. 7. 8.)
 - 물류센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감전사(2018. 8. 29. CJ물류센터)
 - 건설현장에서 조공으로 일하다 추락한 20대 청년(2020. 1. 21.)
 - 송파 모녀 자살 등(2014. 2. 26.)
- '해고는 살인이다' 외치니 비정규직의 한마디 "해고·취업 반복 우리는 예수인가"

-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시 노동문제에서 다시 한번 분단.
- '빨갱이' → '귀족노조' 비난의 주된 용어 변경
-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지난 30년간 변화된 노동현장의 모습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대기업 정규직의 울타리 밖을 넘지 못했음을 확인 - 귀족노조 프레임에 갇힘.
- 현실에서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 남과 북의 경계선과 마찬가지로 치열한 갈등과 반목 표출.
- 정규직 /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 우리가 직시해야 할 노동현실 문제를 아프게 말하고 있다.
- 현재의 상황 방치할 경우 현실의 갈등과 반목 고착화.
-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 대표적 모습

노동의 시민권??

- 현재의 '노동'정책은 생산의 효율성 극대화과 성장을 실현하는 경제의 시장 논리와 동일
- 노동의 시민권은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사회적 결함을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 과정에 기여하는 정도에 비례해 부여되는 가치와 독립적으로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갖는 커다란 제약에도 불구하고 광범한 문제 해결의 공간. 노동의 실질적 시민권 확대를 위한 민주주의의 확장 필요.

변화된 환경

- 10년만에 정권교체, 민주정부라고 자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또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서 누적되어 온 사회적 불만 해결 노력 미흡.
- 정치환경의 변화 그 자체가 사회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정치환경 변화가 그동안 대표되지 못했던 다양한 사회갈등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 노동, 노동자, 노동조합, 노동운동 등 민주주의의 자율적 결사체들이 다양한 사회경제적 불만들을 대표해야 하고, 이들에게 사회는 상당한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

‘노동’ 있는 민주주의 가능하려면?

- 노동운동, 배타적인 계급의 이익만이 아닌 다수 경제시민들의 요구를 모아내어 사회 다수를 대표하는 전략 채택해야. 고용과 임금에서 한 발 더 나가 불평등 문제로 확장.
- 민주주의는 정치제도이지만 시민들의 삶에서는 생활양식 문제. 따라서 ‘노동 없는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생활양식 변화마저 바꾸어 버린다.
- ‘노동 없는 민주주의’가 시민들의 삶에 남기는 상처는 깊은 무기력과 윤리의 붕괴이고, 그것은 다시 민주주의 그 자체를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져.
- 하지만 무기력한 삶에서 탈출은 우연과 축복으로만 가능하지 않아. 민주주의는 좋은 우연과 축복의 기회를 최소한 평등에 가깝게 만드는 과정이어야.
- 결국 ‘노동 있는 민주주의’라는 말은 노동이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를 통해 자신을 포함한 다수의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확대 것.

노동과 민주주의

- 한국의 민주주의에서 노동은 배제와 억압의 대상.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의 등장, 노동운동의 큰 도전이자 위기.
- 노동운동, 민주주의에 참여할 것인가? 참여하지 않을 것인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노동운동의 급격한 성장.
-"참여할 것인가? 참여하지 않을 것인가?"를 두고 치열한 논쟁.
- 다양한 결과
-파시즘의 등장과 전쟁
-냉전과 복지국가의 등장
-신자유주의와 그에 대한 대응
-현대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라는 더 좋은 성과

- 노동운동을 포함한 사회운동, 민주주의라는 틀 안에서 싸워나가는 방식을 익혀야 원하는 개혁을 이룰 수 있어.
- 복잡하고 거대해진 현대 국가 안에서 민주주의 방식으로 싸워나가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열려있는 자세와 이견을 다루는 현명함과 의사소통이 필연
- 한국사회에서 노동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대변하면서도 민주주의 안에서 자신의 힘을 성장시킬 수 있는지 고민해야.
- 따라서 '노동 있는 민주주의'는 사회개혁의 필수요소
- 한국사회가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한 것은 한국 민주주의 자체가 실패한 것을 의미.

올해는 전태일열사 50주기



- 1948년 8월 26일
§
- 1970년 11월 13일
-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은 22세의 나이로 불꽃이 됨

어떻게??

- 87년 이후 30년과 촛불혁명... 과거와 현재의 광장 민주주의는 노동 없는 민주주의를 극복하는 기회가 돼야.
- “노동은 모든 사회 구조물의 기반을 이루는 힘. 경제성장도 시장도 재벌 대기업도, 그리고 민주 정부도 모두 노동에 기반을 두고 서있어
- 결국 노동 없는 경제, 노동 없는 시장으로 한국사회가 ‘바닥으로의 질주’가 계속 된다면, 민주주의도 경제도 유지될 수 없어.
-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민주주의 자체를 잘 제도화하고 실천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서있는 사회경제적 기반을 튼튼히 해야.
- 그 핵심에 ‘노동’이 위치

성평등과 민주주의

정아은(소설가)

성평등과 민주주의

“자본주의 프리즘으로 들여다본
가족, 공동체, 민주주의”

01

성평등과 민주주의



《당신이 집에서 논다
는 거짓말》

정아은 지음,
천년의 상상, 2020

우리 사회가 기혼 유자녀 여성을 대하는 방식

1. 바깥에서 일할 때: "엄마는 집으로!"
2. 집으로 가면: "너 집에서 노는구나!"
3. 집으로 간 뒤: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남편이 벌어드 주는 돈으로 편하게 먹고 사는구나!"
4. 다시 바깥으로 나가 일하면: "엄마는 집으로!" 1단계부터 다시 반복

우리 사회가 기혼 유자녀 남성을 대하는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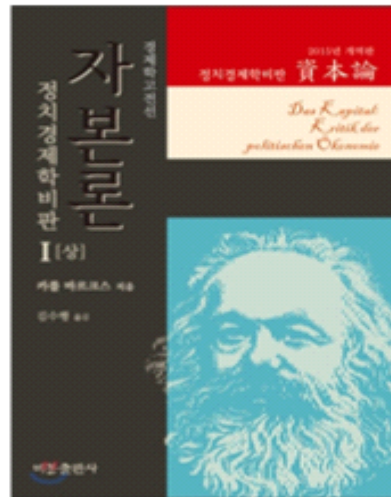
1. 결혼했을 때: 돈 벌어야지!
2. 아이가 생겼을 때: 더 많이 벌어야지!
3. 살림과 육아에 동참할 때: 계속 많이 벌어야지!
4. 살림과 육아에 동참하지 않을 때: 더더욱 많이 벌어야지!
5. 살림과 육아에 동참하다 말다를 반복할 때: 어쨌든 많이 벌어야지!

함께 읽어요

집안일이란 무엇인가. 집안일은 사람의 몸을 살아 숨 쉬는 상태로 유지하게 만드는 여러 종류의 행동을 말한다. 몸의 살과 피가 될 음식을 만드는 행위, 몸을 보호하기 위해 입을 의복을 깨끗이 빨아 너는 행위, 몸이 머무는 공간을 쓸고 닦는 행위 등 몸을 쾌적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행하는 다양한 활동을 우리는 집안일이라 부른다.

함께 읽어요

그러므로 집안일은 모여서 함께 사는 이들이 각자 해결해야 할 자신의 생명 유지 활동이다. 본래 각자가 감당해야 할 제 몫의 생명 유지 활동을 이리저리한 이유로 '주부'라 불리는 집안의 한 사람에게 몰아주고 나머지 구성원들은 그렇게 얻은 시간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시스템을 우리는 '가족'이라 부른다.



《자본론》

칼 마르크스 지음,
김수행 옮김,
비봉출판사, 2015

자본주의에서 노동자가 하는 역할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마리아 미즈 지음,
최재인 옮김,
갈무리, 2014

함께 읽어요

- 마리아 미즈는 전통적 맑스주의를 비판한다. 전통적 맑스주의가 임금노동이 아닌 노동을 생산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향을 조장하여 사회적 서열과 차별을 강화시키고, 노동을 노동시간으로 환원시키는 것을 통해 노동과 삶을 분리시키는 문제를 양산해 왔다고 지적한다.

성별분업의 기원

- 산업혁명
- 인클로저
- 노동력의 분리 판매와 재생산 시스템의 공중분해
- 현대의 여성들은 이전 시대의 여성들보다 편해졌는가? “나 때는 손빨래로 다 했는데 지금은 세탁기가 다 해주니 고마운줄 알아라”라는 말은 맞는가?

04

성평등과 민주주의



《혁명의 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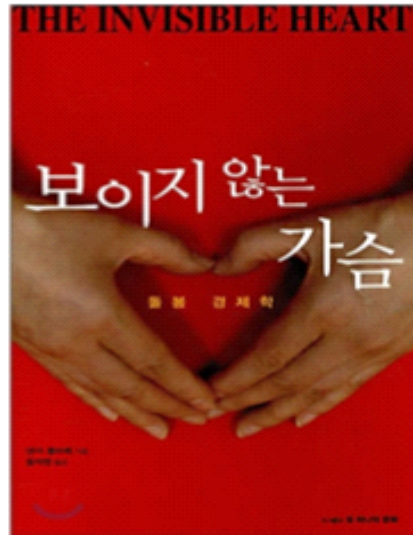
실비아 페데리치 지음,
황성원 옮김,
갈무리, 2013

- 자본주의 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일정 판 폭의 이윤이 유지되어야 함
- 그를 위해서는 노동자에게 저임금을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노동자에게 주는 월급의 산정기준
- 물가인상폭만큼만의 인상
- 물질이 아닌 물질을 가공하는 노동력은 월급의 산정기준에 들어가지 않음

- 가사노동에 임금을 지불하면 이러한 저임금 상태를 해소할 수 있음
- 주부인 여성이 온종일 가사일을 하고도 '집에서 논다'는 말을 듣는 아이러니에서도 벗어날 수 있음
- 그렇다면 어떻게 임금을 지불할 것인가? 누가 지불할 것인가?

- 이혼 시의 재산분할
- 국민연금 청구권
- 공공기관의 입장료 할인
- 다둥이 카드
- 범위를 좀 더 넓히면: 회사에서 월급에 재
생산비용을 더해서 주는 쪽으로

- 전통적인 여성운동은
“바깥에 나가 일하라!”고 강조



《보이지 않는 가슴》

낸시 플브레 지음,
황성원 옮김,
갈무리, 2013

함께 읽어요

사회 보장 수당이나 사적 연금 수당은 시장 노동을 해서 벌어들인 소득에 기초하고 있어서,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시장 노동 단절을 경험하지 않아도 된 사람들의 소득은 훨씬 높다. 그런데 누가 미래의 수당의 재원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세금을 지불하는가? 바로 아랫동네 사는 아이들이 자라서 하는 일이다.

함께 읽어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생물학적 차이는 사실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아이와 다른 식구를 돌보기 위해 개인적 책임을 지면서 취약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점이다. 여성이 남편과 완벽하게 평등한 관계에서 시작한다 해도 그 평등한 관계는 점차 약화될 것이다. 돌봄 노동에만 종사하는 개인은 자기의 노동의 산물을 통제하지 않는다. 노동 과정에서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될지는 몰라도 돈을 버는 데 도움이 되는 종류의 경험은 아니다.

- 보이지 않는 손 vs. 보이지 않는 가슴
- 이타적인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사회
- 독신인 남자와 세 아이를 길러낸 전업주부의 노후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 여성의 위치가 바뀌었는데 돌봄의 자리에 남성과 사회가 들어오지 않고 옛 모델만 고수한 결과: 돌봄의 공백

큰 그림으로 보는 세상

- 자본주의 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수많은 요소들
- 돌봄노동, 가사노동, 사랑, 무보수노동, 저임금노동, 천연자원, 맑은 공기와 물
- 회사가 물건을 파는 장면은 빙산의 일각일 뿐. 전체 그림에는 여성, 자연, 저개발국가라는 거대한 비자본주의적 요소가 있음

- 돌봄노동 부문의 인력부족 현상이 의미하는 것, 흔들리는 모성애 신화

경계선을 너머

- 자본주의에서 각기 다른 역할을 맡고 있는
엄마, 아빠, 아이는 각각 어떤 박탈감을 갖
고 있을까?
- 아빠의 입장
- 엄마의 입장
- 아이의 입장
- 핵가족 외부에 있는 이의 입장

경계선을 너머

- 마을 만들기 운동
- 생활 동반자법 제정 운동
- 공교육의 변화 움직임(혁신학교, 대안학교)

경계선을 너머

- 공간의 민주화
 - 사무공간과 생활공간, 학교의 분리
 - 전염병과 공간의 변화
 - 환경이 변하면 사람도 변화
 - 재택근무의 파급력: 회의 감소, 권위있는 상사와의 시간 감소

경계선을 너머

- 이 모든 움직임은 근본적으로 공동체의 복원을 향하고 있음. 공동체가 복원된다는 것은 재생산 노동의 재분배, 재생산의 공유가 일어난다는 의미
- 자본주의 자체의 역동에 의해서도 이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고 있음(이윤체계의 변화, 생태파괴에서 오는 전염병)

경계선을 넘어

- 시대정신의 변화: 위대한 한 명의 지도자 vs. 존엄한 시민 한 명 한 명의 귀한 삶
- 미투운동, 정치인들의 낙마, 운동양상의 변화(지도부나 전위집단이 없는 운동권), 학생회의 약화
-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져왔는가?
 - 글로벌 경제와 글로벌 교류
 - IT 테크놀로지와 통신의 발달

시대를 읽어내는 눈

- 자본가의 호주머니를 불리는 노동 vs. 인간을 살게 하는 노동
- 귀한 노동 영역의 재분배가 민주주의와 연결되는 지점
- 구시대의 패러다임과 미래의 패러다임이 경합을 벌이는 상황. 무엇이 오고 있는지, 이미 와 있는지를 읽어내야.

환경과 민주주의

박주희(인천인천녹색연합)

■ 「환경정책기본법」에 담긴 ‘환경정의’

- 2019년 1월 15일, 「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정의 개념이 반영되어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p>제2조(기본이념)</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계층 간, 집단 간에 환경 관련 재화와 서비스의 이용에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고려한다.</p>	<p>제2조(기본이념)</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관련 법령이나 조례·규칙을 제정·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한다.</p>
	<p>(신설) 제6조의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환경정책에 관한 다른 법령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15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 국가환경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인구·산업·경제·토지 및 해양의 이용 등 환경변화 여건에 관한 사항</p> <p>2. 환경오염원·환경오염도 및 오염</p>	<p>제15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 국가환경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p> <p>2.</p> <p>3.</p> <p>4.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목표의 설정</p>

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 인한 환경의 질(質)의 변화 전망 3. 환경의 현황 및 전망 4.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u>성과 이의 달성을 위한 대책</u> 5.
--	------------------------------

-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란, 환경 관련 법령을 제정, 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모든 사람들이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 받고, 환경적 혜택과 부담의 배분에 있어 공평하게 대우받으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공정하게 구제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의 혜택을 누리고 피해를 나누는 과정은 인종이나 직업 혹은 소득에 따른 차별 없이 동등해야 하며, 환경 의사 결정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면서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⁶⁾

■ 환경 민주주의란?7)

- 환경과 관련된 결정에 시민의 의견이 충분하면서도 공정하게 반영되도록 하며, 그러한 절차 실행을 위해 유의미한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개념.
- 세 가지 원칙
 - 환경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의사결정 과정에 유의미한 정도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환경법률의 시행 또는 피해보상을 청구할 권리

■ 한국 환경 민주주의 수준

- 2015년, 세계자원연구소(WRI)와 액세스이니셔티브(TAI)는 75개 법적 지표와 24개 실행지표로 구성된 환경민주주의 지표(Environmental Democracy Index: EDI)를 개발
- 세계 70여개 국가의 환경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한 결과 발표했는데, 한국은 평가 대상에서 빠져 있어 환경정의연구소가 세계자원연구소와 동일한 환경민주주의 지표(EDI)를 활용해 평가
- 환경민주주의 지표 결과(출처 : 환경정의연구소, 2019년)
 - 3점 만점에 1.48점으로 전 세계 평가 대상 71개국 중 35위

6).2) 환경 민주주의 평가발표회 ‘우리시대 환경민주주의 진단과 과제’ 자료집, 2019년, (사)환경정의

표1. 환경민주주의 지표 결과 비교

구분	정보접근권	의사결정권	사법접근권	총점
우리나라	1.99	0.81	1.65	1.48
오르후스협약 가입국 평균	2.54	1.63	1.81	1.99
고소득 국가 평균	2.12	1.41	1.90	1.81
EDI 총점 상위 10개국	2.45	1.89	2.09	2.14
미국	2.36	2.08	2.05	2.16

표2. 아시아 국가 환경민주주의 지표 결과 비교

구분	정보접근권	의사결정권	사법접근권	총점
우리나라	1.99	0.81	1.65	1.48
인도네시아	2.33	1.33	1.73	1.80
인도	1.97	0.99	2.30	1.75
몽골	1.67	0.96	2.07	1.56
일본	1.96	1.11	1.47	1.51

■ 사례

1. 보장받지 못하는 알권리

- 1) 정보공개소송 사례
 - 부평미군기지 토양오염
 - 인천공항 불소오염

- 2) 화학물질, 먹을거리(GMO) 관련 정보공개

2. 형식적인 의사결정 과정, 배제되는 존재

- 1)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

2)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하는 청소년

3) 수도권에 공급되는 전기, 매립되는 쓰레기로 인한 피해는 인천시민의 몫

* 생각해 볼 거리 : 비인간 존재를 의사결정 주체로 인정할 수 있을까?

3.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피해

1) 가습기살균제 문제

2) 쇧가루 마을 ‘사월마을’ 피해

■ 환경(생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속의 과정

■ 함께 생각하고 이야기 나눌 주제

경제와 민주주의

김진방(인하대학교 교수)

○ 경제문제와 경제체제

- 경제문제: 무엇을 어떻게 생산해서 누가 가질 것인가?
- 경제체제: 한 사회가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 민주적 경제체제

- 가능한 여러 경제체제 사이에서의 선택이 민주적이어야 할까?
- 경제체제의 운용 원리가 민주적이어야 할까?
- 1인1표 vs. 1원1표

○ 자유방임주의

- 경제 원리로서의 자유방임은 모든 거래가 오직 개인들 사이의 경쟁으로 정해지도록 하는 것
- 더 작은 대가를 요구하는 사람의 물건이 처분되고, 더 큰 대가를 지급하려는 사람이 물건을 차지하는 방식
- 세 가지 경쟁 개념: 자유경쟁, 완전경쟁, 공정경쟁

○ 네 가지 다른 생각

- A. Smith (1776): 사람들은 오직 제 이익만 좇는다. 그리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자기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목적을 달성한다. 그들이 진실로 사회의 이익을 증진하려 하기보다 각자 자기 자신의 이익을 좇는 편이 종종 더 효과적으로 사회의 이익을 증진한다.
- Jean-Jacques Rousseau (1754): 사냥꾼들이 사슴 사냥에 성공하려면 각자 자신이 맡은 길목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 하지만 한 사냥꾼 옆으로 토끼가 지나갈 때 이를 본 그 사냥꾼이 자기 길목을 내팽개치고 토끼를 쫓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다.

- J. M. Keynes (1936): 이 세상은 사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을 항상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으며, 그렇게 관리될 수도 없다. 개인이 고립된 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 할수록 사회적 이익의 추구는 희미해지거나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
- F. Hayek (1973): 연관된 각종 사실에 대한 지식이 여러 사람들 사이에 분산되어 있는 시스템에서는 다양한 개인들의 상이한 행동을 조정하는 역할을 가격이 담당한다. ... 시장질서에서는 사람들이, 오로지 이기적이든 아니면 매우 이타적이든,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의 목표가 더 진전되도록 한다.

경제민주화의 세계사

○ 산업민주주의에서 경제민주주의로

- Webb and Webb (1897) *Industrial Democracy*
- Naphtali (1928) *Wirtschaftdemokratie*

○ 노동의 참여

- 독일의 공동결정제: 교섭의 외부화를 전제로 법제화된 기업별 의사결정 참여와 작업장 수준의 참여
- 네덜란드의 사회경제협의회(SER)
- 스웨덴의 임노동자기금(löntagarfonder)

○ 미국의 경제민주화: New Deal

“방방곡곡에서 지난 몇 년간 정부의 정치철학에서 잊힌 사람들이 ... 국부(國富)의 분배에 참여할 수 있는 더 공평한 기회를 줄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여러분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미국 국민을 위한 뉴딜을 약속합니다. ... 미국을 그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성전(聖戰)에서 승리하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사적 권력의 집중이 역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중으로 말미암아, 노동과 자본에 고용을 제공하는 수단이자 나라의 인민 모두에게 소득과 수입의 더욱 평

등한 분배를 가져다주는 수단이어야 할 사적 기업의 경제적 유용성이 심각하고 훼손되고 있습니다.”

- 개혁입법: Glass-Steagall Act, Securities Act, Social Security Act, Wagner Act

○ 전후 일본의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농지개혁, 노동개혁

“생산 및 교역 수단의 소유 그리고 소득의 넓고 정의로운 분배 … 민주적 기반 위에서 조직된 노동”

대한민국의 경제민주화

◦ 제헌헌법 제84조 (1948년 7월 17일 제정)

-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

◦ 헌법 제119조 2항 (1987년 10월 29일 개정)

-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공정거래법 제1조 (1980년 12월 31일 제정)

-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공정거래법 제3장 제9조 (1986년 12월 31일 개정)

-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의 집중**의 억제

김대중정부의 경제민주화

- 김대중 대통령 취임사(1998)
 -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병행시키겠습니다.”
 -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병행해서 실천함으로써”
- 김대중(1997): ‘민주적 시장경제’
 - “경제 운영에 민주주의 원리, 원칙의 적용을 확대”
 -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
 - “진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
- 최장집(1998): ‘민주적 시장경제’
 - “시장 기능을 공동체적 기반 위에 놓으려는 시도”
 - 자유주의 시장 원리에 국가의 사회보장정책과 시민사회의 시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결합
 - 복지개혁, 재벌개혁, 노동개혁

다시 떠오른 경제민주화

- 양극화 현황
 - 소득불평등지수, 빈곤율 추이
 - 임금불평등지수, 저임금계층비중 국제비교
- 양극화의 요인
 - 대기업 vs. 중소기업 생산성 격차
 - 정규직 vs. 비정규직 임금 격차
- 양극화의 배경
 - 노동조합조직율
 - 단체협약적용율

박근혜 대통령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

◦ 경제적약자의 권익보호

-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 제고로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 중소도시 대형 마트의 신규입점 지역협업체 합의된 경우에 한해 허용
-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입점에 대한 불공정행위,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행위 근절
- 건설·IT분야 등 하도급 불공정 특약에 따른 중소기업자 피해방지
-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해 소비자보호기금 설립, 소비자 피해구제 명령제 도입

◦ 공정거래관련법 집행체계개선

-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 금지를 청구하는 제도 도입

◦ 금산분리의 강화

- 금융·보험회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상한을 5%까지 강화
-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축소
- 대주주적격성심사를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

◦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불법 및 사익편취행위 근절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에 대해 형량을 강화
-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
-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부당내부거래 금지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부당 내부거래로 인한 부당이익은 환수

◦ 기업지배구조개선

-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신규 순환출자 금지

-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가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독립성 강화를 전제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의 의결권 행사강화
-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도 단계적 도입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계획

목 표	전 략	과 제
1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23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2 더불어 잘사는 경제	2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재벌 총수일가 전횡 24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3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25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4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26 사회적경제 활성화
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5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27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출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2017년 7월.

◦ 과제23.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목표: 대·중소기업 간 구조적인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 행태를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성장기반 마련

- 내용: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및 법 집행 강화

◦ 과제24,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

- 목표1.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 및 부당한 경영승계 차단
- 목표2.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 및 부당내부거래 근절과 금융계열사를 통한 지배력 강화 방지
- 내용1.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추진
- 내용2.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강화, 인적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 방지, 기존 순환출자 단계적 해소 방안 마련

재벌체제의 세 문제

◦ 재벌체제

- 소수의 개인 또는 가족이 적은 지분을 소유하고서도 많은 대기업을 배타적·절대적으로 지배하며, 그 지배를 대물림하는 체제

◦ 경제력 집중

- 소수의 개인이 대기업집단을 지배함으로써 경제를 지배
- 기업과 시장 그리고 경제를 넘어 사회 여러 영역에서 영향력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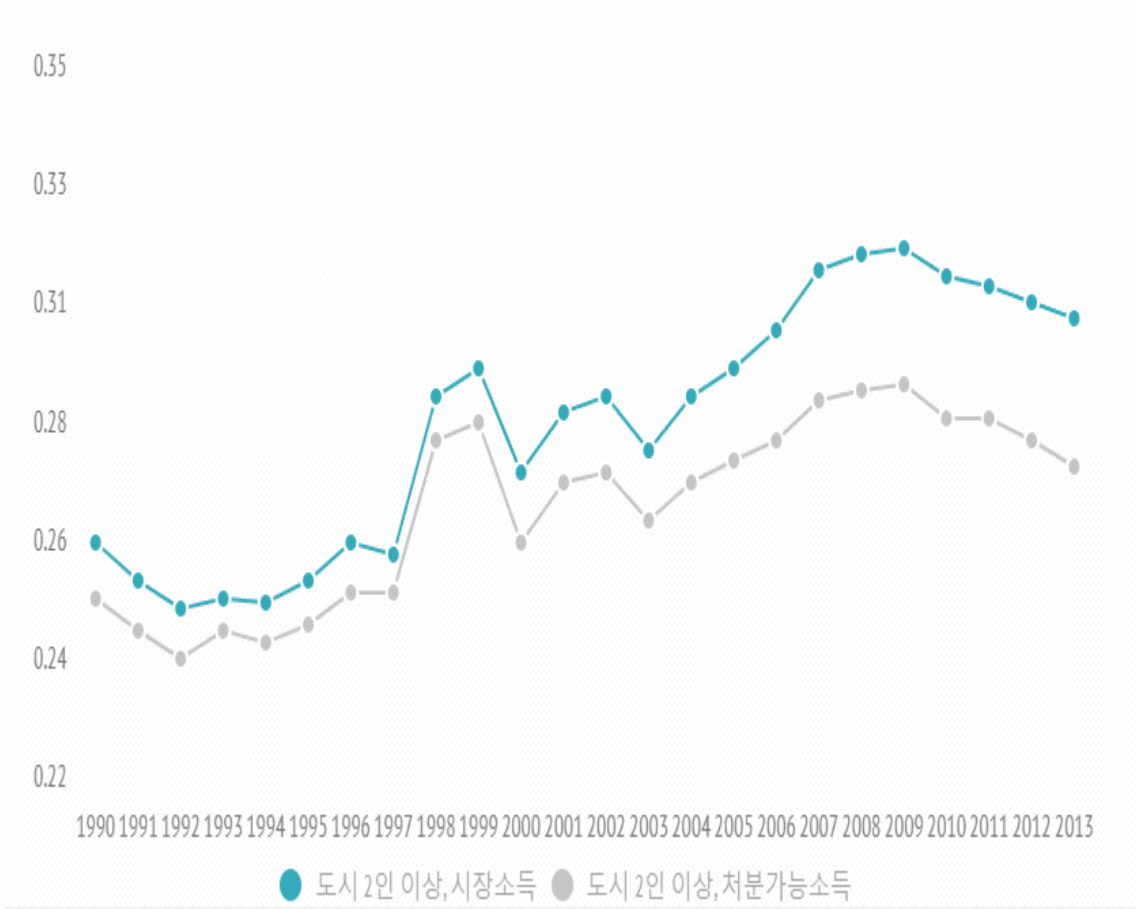
◦ 소유-지배 괴리와 대리인 문제

- 기업의 이윤과 가치보다는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지배력을 행사
- 기업의 수익과 성장보다는 총수의 지배력 강화와 확대를 추구

◦ 지배력 세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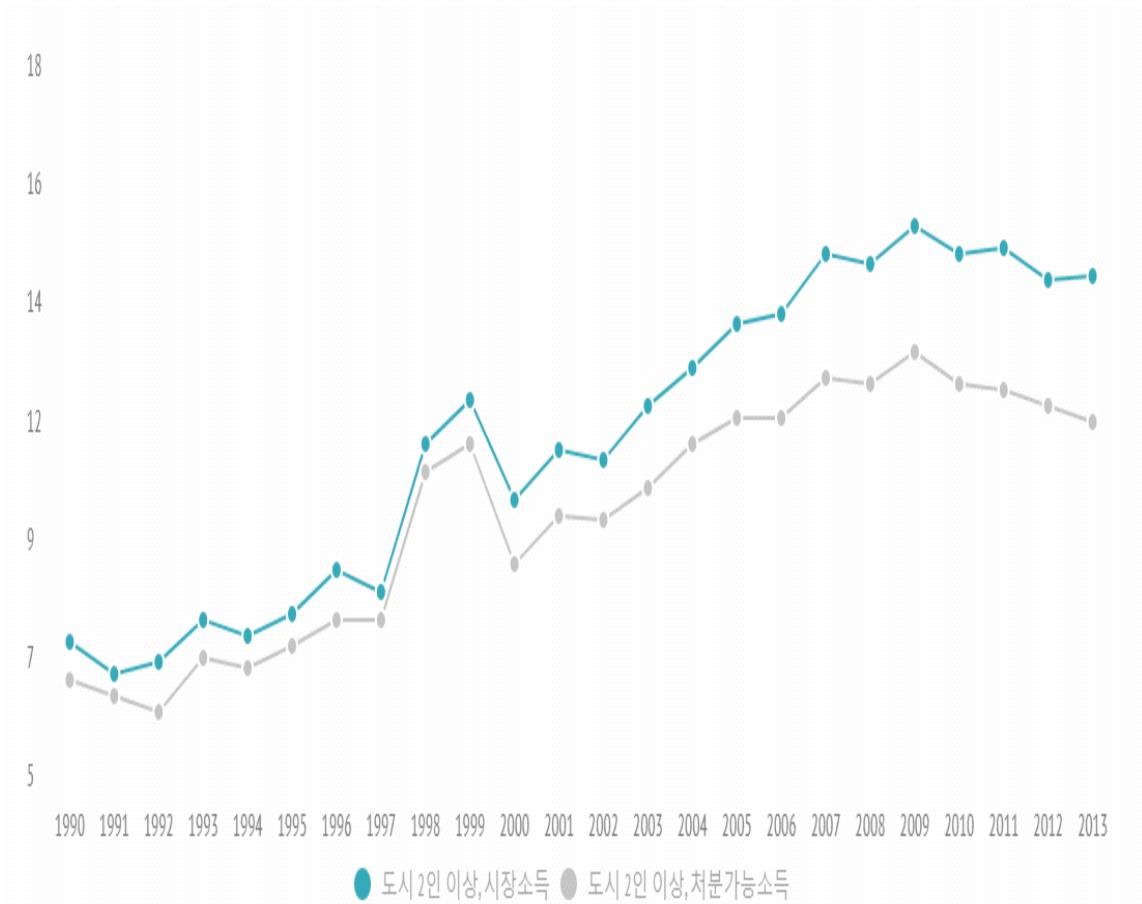
- 총수일가가 소유하는 주식의 가치보다 총수가 행사하는 지배력의 가치가 훨씬 크기에 주식과 함께 지배력을 자녀에게 넘기려 함
- 탈세와 빼돌리기(일감몰아주기, 회사기회유용, 부당내부거래)

그림1. 지니계수(Gini Index)로 살펴본 소득불평등



<https://infogram.com/untitled-1gnl8m3nvv5j236>

그림2. 상대빈곤율 추이 (단위 : %)



* 상대빈곤율: 중위소득 50% 미만의 소득을 얻는 사람들의 비중

<https://infogram.com/untitled-1g3qnmxr6znqmlw>

그림3. 임금불평등지수 국제 비교(하위 10% 대 상위 10%,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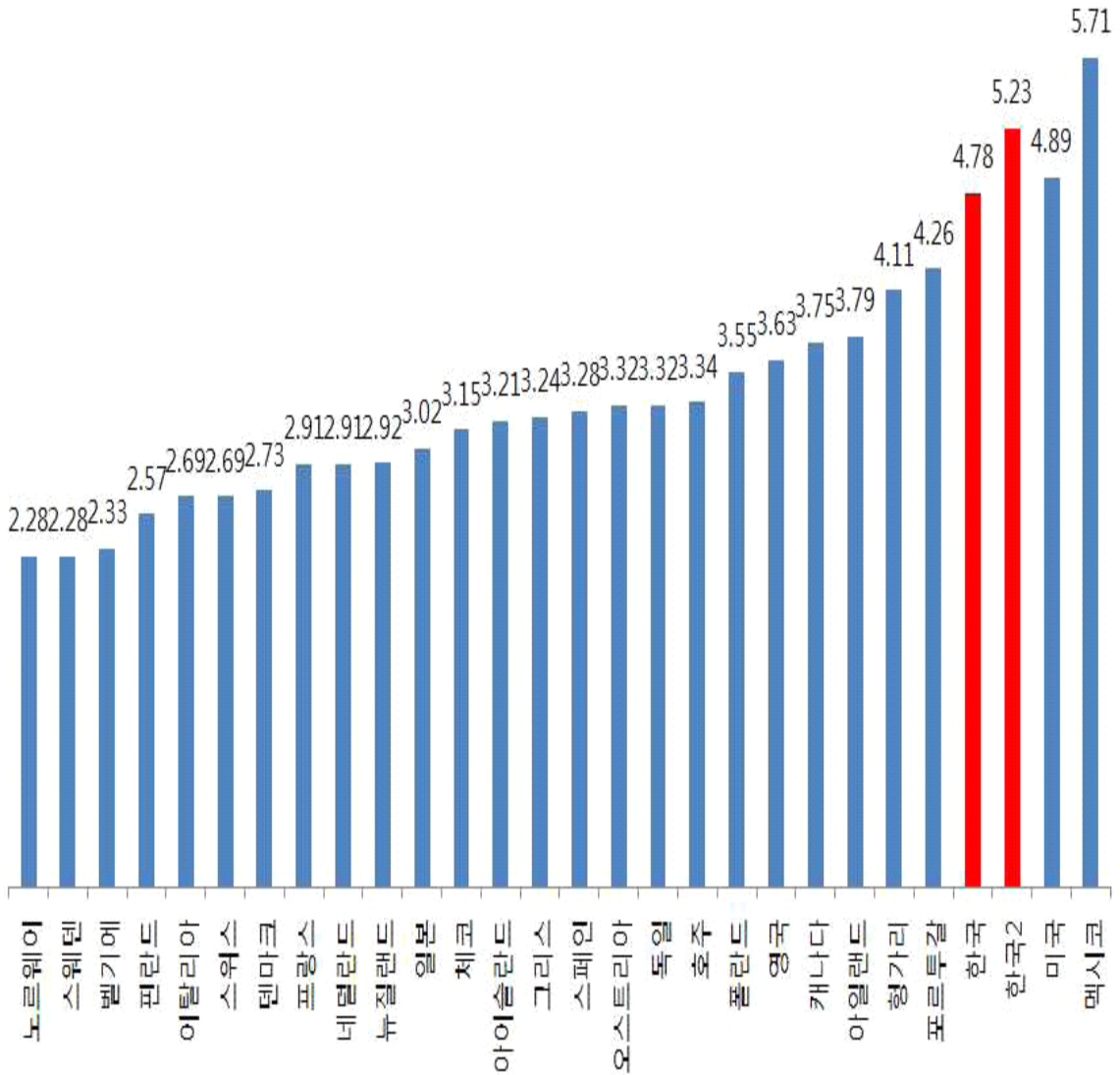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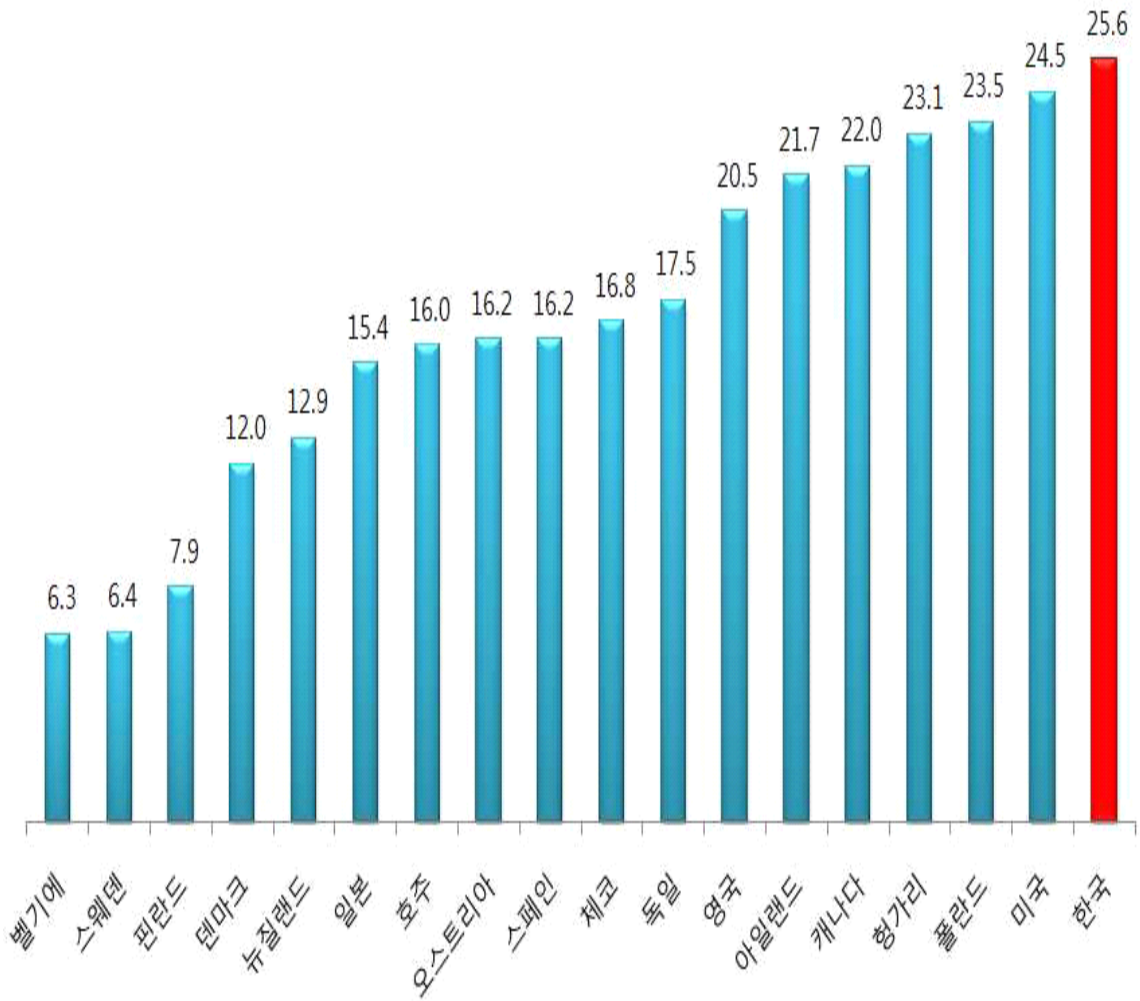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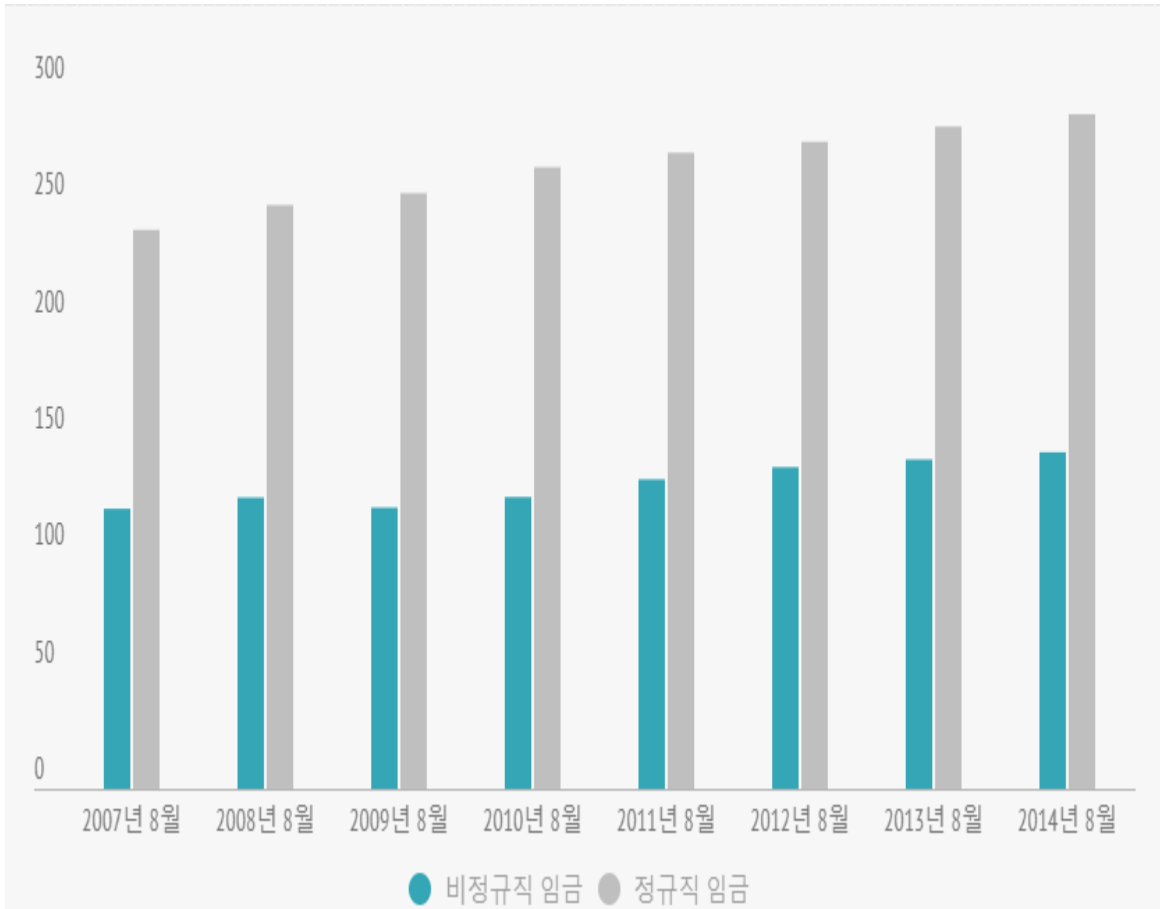


그림4. 저임금 노동자 비중 국제 비교(2008)



* '저임금'의 기준은 중위임금의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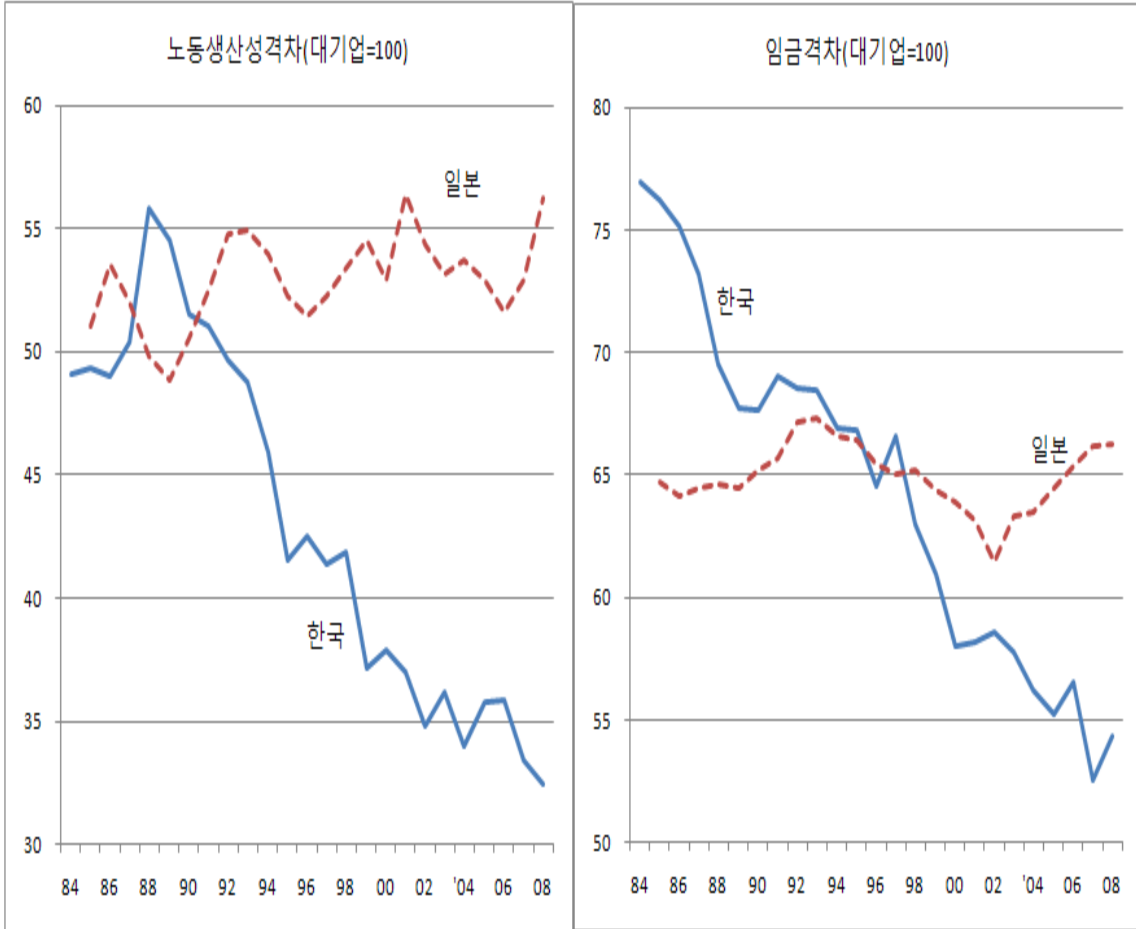
그림5.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 (단위 : 만원)



<https://infogram.com/untitled-1gdk8pdj56jvpq0>

<https://infogram.com/copy-1g3qnmxr670qml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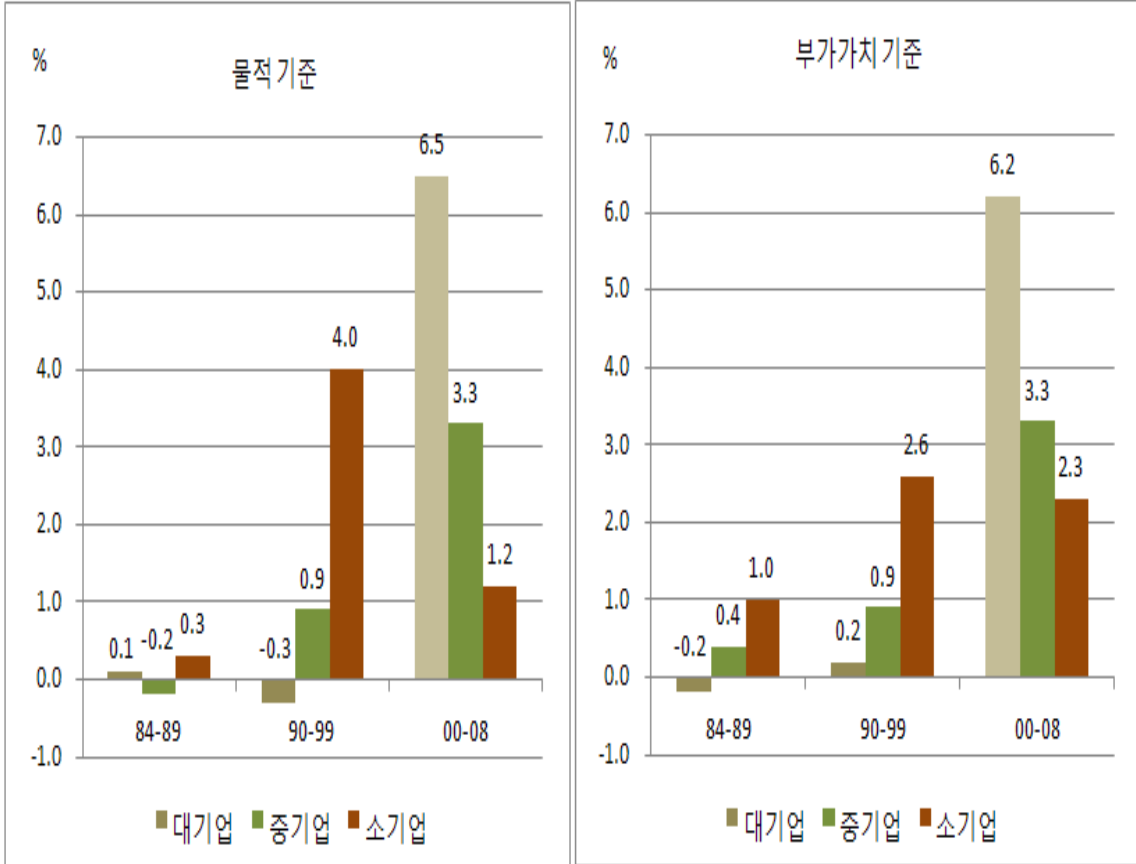
그림6. 한국과 일본 대-중소기업 노동생산성 및 임금 격차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통계조사; 日本經濟産業省, 工業統計表

- 주: 1) 대기업은 종사자수 300인 이상, 중소기업은 10-299인
 2) 노동생산성은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 임금은 종업원 1인당 연간급여액 기준

그림7. 대-중소기업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주: 1) 물적 기준은 기업규모별 이윤마진율[(부가가치 생산액-급여액)/(생산비+급여액)]이 동일하다는 조건을 부가하여 추정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2) 대기업은 종사자수 300인 이상, 중기업은 50-299인, 소기업은 10-49인

인천민주화운동센터
2214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바위로 78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402호
T.032-862-5353 F.032-862-5352
홈주소
메일주소